



제433회국회(임시회)
제4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정희용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0456호) 등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7건
 - 장애인 선거권자 및 피선거권자 편의 확보

2026. 3.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조문상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5
III. 검토의견	21
1. 투표보조대상 확대 및 투표보조원 도입	21
2. 책자형 선거공보물 작성시 수어영상으로 출력되는 바코드 또는 QR코드 표시 의무	30
3. 선거방송의 수어·자막 방영 의무화	40
4. 장애인 투표소 접근 편의 보장 규정 명문화	47
5.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의 점자형 선거공보 갈음규정 삭제 등	54
6.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을 디지털 파일로 전환하여 저장한 저장 매체 제출 의무화 등	59
7.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보 작성 근거 마련 등	63
8. 정신적 장애 등을 지닌 선거인에 대한 투표보조	69
9. 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대상에 장애 추가 등	74
10. 장애 관련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이의제기 시 처리기한 신설	80
11.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 위촉 대상에 장애인 단체 추가	83
12. 발달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선거공보 작성 등 선거정보 제공	87
13. 청각장애인의 참정권 보장(한국수어·자막 제공 의무화 등)	94
14. 교통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성 보장	103

15. 병원 및 장애인 거주시설 등의 기표소에 참관 의무화	106
16. 발달장애선거인 등을 위한 그림투표용지 등 제작·사용	109
17. 정신적 장애 등이 있는 선거인도 투표보조인 동반 허용	114
18. 재외투표관리관 직무에 교통약자 등의 투표소 접근 편의성 보장을 위한 조치 추가	118
19. 장애인인 피고용인에게 투표시간 청구 가능 안내 의무화 등	122
20. 금치산자제도 폐지에 따른 선거권 제한규정 정비	127
21. 발달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 작성 등	132
22. 교통약자의 투표소 및 사전투표소 접근 편의성 보장	144
23. 투표용지에 소속정당을 상징하는 마크·심벌 및 후보자 사진 게재 등	149
24. 점자형 선거공보 의무적 작성·제출 대상 선거 추가 등	153
25. 후보자별로 제출한 디지털 파일을 선거별로 통합	159
26. 중증장애인 후보자에 대한 선거비용제한액 확대 등	162
27. 선거 여론조사 기준에 노약자·장애인 등의 특성 반영	172

[정희용의원안1], [정희용의원안2], [정희용의원안3], [김예지의의원안1],
[주호영의원안], [김예지의의원안2], [정희용의원안4], [박주민의원안],
[최보윤의원안], [서미화 · 용혜인의의원안1], [박균택의원안],
[박민규의원안], [서미화 · 용혜인의의원안2], [서미화의의원안],
[이인영의원안], [김소희의원안], [구자근의원안]

I . 제 안 경 위

1. 정희용의원안1

가. 제 안 자 : 정희용의원 등 12인

나. 제 안 일 : 2024. 6. 13.

다. 회 부 일 : 2024. 6. 14.

2. 정희용의원안2

가. 제 안 자 : 정희용의원 등 15인

나. 제 안 일 : 2024. 6. 14.

다. 회 부 일 : 2024. 6. 17.

3. 정희용의원안3

가. 제 안 자 : 정희용의원 등 15인

나. 제 안 일 : 2024. 6. 17.

다. 회 부 일 : 2024. 6. 18.

4. 김예지의원안1

가. 제 안 자 : 김예지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4. 7. 11.

다. 회 부 일 : 2024. 7. 12.

5. 주호영의원안

가. 제 안 자 : 주호영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4. 7. 17.

다. 회 부 일 : 2024. 7. 18.

6. 김예지의원안2

가. 제 안 자 : 김예지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4. 9. 30.

다. 회 부 일 : 2024. 10. 2.

7. 정희용의원안4

가. 제 안 자 : 정희용의원 등 12인

나. 제 안 일 : 2024. 11. 20.

다. 회 부 일 : 2024. 11. 21.

8. 박주민의원안

가. 제 안 자 : 박주민의원 등 12인

나. 제 안 일 : 2024. 11. 28.

다. 회 부 일 : 2024. 11. 29.

9. 최보윤의원안

가. 제 안 자 : 최보윤의원 등 11인

나. 제 안 일 : 2025. 1. 21.

다. 회 부 일 : 2025. 1. 22.

10. 서미화·용혜인의원안1

가. 제 안 자 : 서미화·용혜인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5. 3. 25.

다. 회 부 일 : 2025. 3. 26.

11. 박균택의원안

가. 제 안 자 : 박균택의원 등 11인

나. 제 안 일 : 2025. 4. 9.

다. 회 부 일 : 2025. 4. 10.

12. 박민규의원안

가. 제 안 자 : 박민규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5. 7. 11.

다. 회 부 일 : 2025. 7. 14.

13. 서미화·용혜인의원안2

가. 제 안 자 : 서미화·용혜인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5. 9. 30.

다. 회 부 일 : 2025. 10. 1.

14. 서미화의원안

가. 제 안 자 : 서미화의원 등 15인

나. 제 안 일 : 2025. 10. 2.

다. 회 부 일 : 2025. 10. 10.

15. 이인영의원안

가. 제 안 자 : 이인영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5. 11. 20.

다. 회 부 일 : 2025. 11. 21.

16. 김소희의원안

가. 제 안 자 : 김소희의원 등 17인

나. 제 안 일 : 2025. 12. 18.

다. 회 부 일 : 2025. 12. 19.

17. 구자근의원안

가. 제 안 자 : 구자근의원 등 13인

나. 제 안 일 : 2026. 1. 6.

다. 회 부 일 : 2026. 1. 7.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정회용의원안1

현행법에 따라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의료기관 등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은 거소투표를 신청할 수 있으나, 중증장애인이 거주하는 시설의 적극적인 안내와 도움 없이 거소투표를 신청하고 실제 거소투표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이에 현재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 대한 가족 등의 투표보조를 중증장애인에게까지 확대하여 본인의 의사에 따라 투표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57조제6항).

2. 정회용의원안2

현행법은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별도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청각장애인은 청각 장애 이외에도 한글 이해력이 다소 부족한 경우가 있으며, 이로 인해 글로만 만들어진 선거공보물로는 후보자의 공약이나 정치 비전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책자형 선거공보물에 그 내용이 수어영상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경우 청각장애인이 후보자의 공약과 정치 비전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이에, 모든 책자형 선거공보물에 그 내용이 수어영상으로 출력되는 인

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도록 하고, 그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2항 후단 신설 등).

3. 정회용의원안3

제안이유

현행법은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후보자의 방송광고 등에 한국수어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의무규정이 아니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점자보도블록 등 장애인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제반 시설 설치 관련 규정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 편의 제고 조치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책무가 덜 부각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청각장애선거인의 한국수어 의무화 및 장애인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한국방송공사의 경력방송, 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정당의 정강·정책의 방송연설 등에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한국수어 또는 자막방영을 의무화하고(안 제70조 제6항 및 제72조제2항 등),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

과함(안 제261조제4항제1호 신설).

나. 투표소에는 점자유도블럭 등 장애인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제반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되, 투표소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제반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투표사무원을 배치하여 장애인의 투표소 이동을 보조하도록 함(안 제147조제11항 신설).

4. 김예지의원안1

제안이유

현행법은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되 이를 대신하여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음. 또한, 후보자가 선거공보의 내용을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로 전환하고 해당 파일을 저장한 저장매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할 경우 이를 선거공보와 함께 발송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규정들이 시각장애선거인의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우선,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 후보자가 점자형 선거공보를 대신하여 표시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의 경우, 바코드를 음성변환 출력기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야 함에 따라 정보 접근성이 제약되며, 음성으로만 정보가 제공될 경우 정보 전달의 정확성이 떨어져 시각장애인선거인의 참정권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음.

다음으로 임의 사항인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을 담은 저장매체 제출의 경우, 후보자마다 제출하는 디지털 파일의 형태가 다양하여 오히려 시각장애인선거인의 불편을 야기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예를 들어 후보자가 그림과 문자가 섞여 있는 형식의 디지털 파일로 선거공보의 내용을 전환한 경우, 해당 파일을 변환할 수 있는 특정한 프로그램이 있어야만 시각장애인선거인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음.

이에 시각장애인선거인을 위한 선거공보와 관련된 내용을 정비하여 시각장애인선거인의 알권리를 보다 강하게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가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제출을 대신하여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함 (안 제65조제4항 단서).

나. 후보자가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을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

는 디지털 파일로 전환하여 저장한 저장매체를 제출하는 경우 그 디지털 파일의 형식을 문자로만 구성된 파일로 제한함(안 제65조 제11항).

다.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을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로 전환하여 저장한 저장매체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함(안 제65조제11항 단서 신설).

5. 주호영의원안

현행법은 시각장애가 있는 선거인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반드시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시각장애 이외의 장애를 가진 선거인의 선거정보습득을 위한 제도는 충분히 마련되지 못하여 선거권이 평등하게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청각장애인의 경우 시각에 문제는 없으나 문맹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선거공보의 해석에 어려움이 따르며, 발달장애인 또한 문해력이 부족하여 선거공보를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시각장애 이외의 장애가 있는 선거인을 위하여 음성, 점자 또는 수화로 작성된 선거공보나 선거공약 등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된 선거공보 등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

조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4항 등).

6. 김예지의원안2

현행법은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의 경우에는 기표소에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등 정신적 장애로 인해 기표소에 홀로 들어가 투표를 하기 어려운 선거인의 경우 투표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위해서는 보조인의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으로는 투표보조 대상에 제외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혼자 기표소에 들어가서 기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선거인도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하여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신적 장애를 가진 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제고하고 이들의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57조제6항).

7. 정희용의원안4

제안이유

현행법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또한,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때에도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후보자와 관련하여 장애를 공연히 비하·모욕하거나 후보자의 장애에 관한 허위의 사실이 무작위로 공표되는 경우가 있어 장애를 이유로 한 혐오와 차별이 없는 민주적인 선거운동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후보자 및 후보자의 가족 등과 관련하여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것을 금지하는 대상에 “장애”를 포함함(안 제110조제2항 등).

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장애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이 공표되었다는 이의제기가 있는 때에는 직근 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제기가 있는 날부터 3일 이내에 관계자에 대하여 증명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여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거짓으로 판명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도록 함(안 제110조제4항 신설).

다. 후보자의 장애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이 공표된 때는 일반 허위사실 공표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함(안 제250조제2항 단서 신설).

8. 박주민의원안

「대한민국헌법」은 선거권을 모든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현행법은 선거권행사의 보장 차원으로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 대한 대책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기표소에서는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자신이 기

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 한정하여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인에게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 외 발달 장애 등 기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선거인은 투표보조를 받을 수 없게 되어 투표보조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장애의 종류가 다른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음.

이에,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는 선거인의 장애를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에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확대함으로써, 장애인인 선거인의 선거권이 온전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7조제6항).

9. 최보훈의원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장애인인 선거인의 편의 제공을 위한 각종 규정을 두고 있음. 즉,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을 위한 거소투표,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 한국수어 및 자막의 방영, 기관·시설 안의 기표소 운용,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 제작·사용, 투표소에서의 가족 등의 투표 보조 등을 들 수 있음.

그런데 이러한 장애인 선거 편의 규정은 장애인에게 정치적 권리를 포함하여 공적 생활에 등등하게 참여할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o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 제29조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9조에 따라 장애인의 정치적 권리를 보

장하고 공적 생활에의 참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현행법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구·시·군선거방송토론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대상군인 학계·법조계·시민단체·전문언론인에 장애인단체를 추가함(안 제8조의7 제2항제2호).
- 나.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는 발달장애인인 선거인을 위하여 별도의 예비후보자공약집·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의2 신설).
- 다. 방송광고,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한국방송공사의 경력방송,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방송시설을 이용한 정강·정책의 방송연설에서는 한국수어 또는 자막 방영을 의무화함(안 제70조제6항 및 제72조제2항, 안 제79조제12항 신설, 안 제81조제8항 등).
- 라. 투표소는 고령자·장애인 및 임산부 등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승강기 및 경사로 등의 편의시설이 있고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하도록 함(안 제147조제2항).
- 마. 기관·시설 안의 기표소에 후보자 등이 선정한 참관인이 없는 경우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회 직원 중에서 1명을 지정하

거나, 그 기표소의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선거권자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1명을 선정하여 기표소의 투표상황을 참관하도록 함(안 제149조제6항 단서 신설).

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발달장애인인 선거인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용지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나타낸 그림투표용지를 제작·사용하거나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소속정당을 나타내는 마크나 심벌표시 등을 기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1조제9항 신설).

사. 정신적 장애 또는 고령으로 인하여 혼자 기표소에 들어가서 기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선거인이 가족, 본인이 지명한 2인 또는 공적 보조원을 동반하여 기표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7조제6항).

아. 재외투표관리관의 사무에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와 격리자등의 재외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제반 시설의 설치, 적절한 재외투표소 위치 확보 등의 조치를 명시함(안 제218조의3제2항제3호).

10. 서미화·용혜인의원안1

제안이유

현행법은 장애가 있는 선거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 투표소 접근 편의,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의 제작·사용, 투표소에서의 가족 등의 투표 보조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대부분의 규정은 대체로 시각장애인 등 신체의 장애를 가진 선거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발달장애인 등 정신적 장애를 가진 선거인의 참정권은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체의 장애 뿐 아니라 발달장애 등 정신적 장애를 가진 선거인을 모두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참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 중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장애의 유형·정도 및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본인에게 직접 알리거나 근로지원인 등 고용된 사람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사람을 통하여 알리도록 함(안 제6조의2제3항 단서 신설).

나. 후보자는 발달장애인을 선거공보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 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후보자는 의무적으로 이를 작성·제출하도록 함(안 제65조제4항).

다.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와 그 소속정당을 식별하기 어려운 선거인의 투표를 보조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보자의 사진 또는 정당마크가 표시된 투표보조용구를 의무적으로 제작·사용하도록 함(안 제151조제9항 신설 등).

11. 박균택의원안

현행법은 후보자가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면서,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반드시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선거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면서,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도 점자형 선거공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후보자들이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이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을 담은 저장매체를 제출할 경우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시각장애선거인에게 해당 저장매체를 발송하고 있는데, 시각장애선거인에게 다수의 저장매체가 발송됨에 따라 발생하는 비효율을 해소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도 점자형 선거공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후보자가 선거공보의 내용이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파일을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들이 제출한 디지털 파일들을 하나의 저장매체에 담아 시각장애선거인에게 발송하도록 하여 시각장애선거인의 정보접근권과 참정권을 보장하고, 동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4항 등).

12. 박민규의원안

2011년 3월 7일 「민법」 개정으로 기존의 “금치산” 제도가 “성년후견” 제도로 개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직선거법」의 관련 규정은 여전히 “금치산” 제도로 규정되어 있기에, 이를 현행법에 따라 개정하기 위한 것임(안 제18조제1항제1호, 제218조의8제4항제3호).

13. 서미화·용혜인의원안2

현행법은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의 경우에는 기표소에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신체적 장애 이외에도 정신적 장애를 가졌거나 노령으로 인하여 기표가 곤란한 선거인 또는 투표 보조를 받을 가족 등이 없는 선거인은 투표 편의 제공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됨.

이에,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은 선거인의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사람 이외에도 선거인의 투표를 보조할 수 있는 공적보조원을 운용하도록 하고, 투표보조 대상도 ‘신체적·정신적 장애 또는 노령으로 인하여 혼자 기표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선거인’으로 확대함으로써, 실질적인 투표보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7조제11항 및 제12항 신설, 제157조제6항 등).

14. 서미화의원안

현행법은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의 50%를 보전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리프트 유세차 등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이 비중증장애인 후보자에 비해 더욱 많음에도 선거비용 보전을 동일한 기준에 따라 받게 되어 지출한 선거비용의 보전에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재는 선거에서 5% 이상 10% 미만의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자는 선거비용을 전혀 보전받지 못하고 있는데, 후보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비중증장애인 후보자에 비해 선거비용 지출이 더 크다는 점과 중증장애인의 정치참여 진입장벽을 낮춰 참정권을 두텁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선거비용의 일부를 보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등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을 비중증장애인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중증장애인 후보자가 10% 이상 15% 미만 득표 시에는 현행 선거비용의 50%에서 상향하여 60%를 보전받도록 하며, 중증장애인 후보자가 5% 이상 10% 미만 득표 시에는 선

거비용의 10%를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증장애인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이 합당하게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고, 중증장애인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제4항 신설, 제122조의2제1항제1호).

15. 이인영의원안

현행법에 따라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음.

지적장애인이나 자폐성장래인 등을 뜻하는 발달장애인은 투표소에서 투표 보조를 받지 않을 경우 선거권을 실제로 행사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현행법에 따른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발달장애인인 선거인도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57조제6항).

16. 김소희의원안

현행법은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별도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한국수어가 모국어인 청각장애인은 한글 이해력이 비장애인에 비해 다소 부족한 경우가 있으며, 이로 인해 글로만 만들어진 선거공보물로는 후보자의 공약이나 정치 비전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그 결과 청각장애인이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어렵고 선거에

참여하여 참정권을 행사하는 데 제약요인이 되고 있음.

청각장애인을 위해 선거공보물에 수어영상 QR코드를 삽입하면 청각장애인이 후보자의 공약과 정치 비전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소중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임. 이에 선거공보에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수어QR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여 청각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2항 후단 및 제122조의2제3항제2호의2 신설).

17. 구자근의원안

현행법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정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선거여론조사의 피조사자가 장애인인 경우 장애 유형이나 중증도에 따라 조사방법이 달라져야 함에도, 선거여론조사기준에는 이와 관련한 조사방법이 열거되지 아니하여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선거여론조사기준에 노약자·장애인 등 피조사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이들이 손쉽게 여론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사방법이 포함하도록 하여 선거여론조사에 다양한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고자 함(안 제8조의8제6항).

Ⅲ. 검토의견

[정희용의원안1], [서미화·용혜인의원안2], [이인영의원안]

1. 투표보조대상 확대 및 투표보조원 도입

정희용의원안1과 이인영의원안은 가족 등의 투표보조를 현행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¹⁾할 수 없는 선거인”뿐만 아니라 각각 “중증장애인인 선거인” 및 “발달장애인인 선거인”도 가능하도록 투표보조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이며,

서미화·용혜인의원안2은 투표보조 대상을 “신체적·정신적 장애 또는 노령으로 인하여 혼자 기표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선거인”으로 확대하고, 이들의 (사전)투표를 보조할 수 있도록 (공적)투표보조원을 두고자 하는 것임.

현행	정희용의원안1	서미화·용혜인의원안2	이인영의원안
第147條(投票所의 設置) ① ~ ⑩ (생략) <u><신설></u>		第147條(投票所의 設置) ① ~ ⑩ (현행과 같음) ⑪ <u>투표관리관 은 신체적·정 신적 장애 또는 노령으로 인하 여 혼자 기표절 차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선</u>	

1) “기표(記票)”의 사전적 정의는 투표용지에 써넣거나 표시를 하는 것을 의미함.(표준국어대사전)

<신 설>

⑪ 투표소의 설
비, 고령자·장
애평인·임산부
등 교통약자와
격리자등의 투
표소 접근 편의

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
명한 2인을 동
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투표관리
관에게 투표를
보조할 사람(이
하 “공적보조
원”이라 한다)
1인 또는 2인의
동반을 요청할
수 있다.

⑫ 투표관리관
은 공적보조원
에 대하여 투표
보조의 절차 및
준수사항 등 해
당 직무에 필요
한 교육을 투표
일 전에 실시하
여야 한다.

⑬ -----

를 보장하기 위
한 제반 시설의
설치, 적절한
투표소 위치 확
보 등의 조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
거관리위원회규
칙으로 정한다.

제148조(사전투표
소의 설치) ①
~ ③ (생략)

<신설>

--공적보조원의
지정 및 교육,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148조(사전투표
소의 설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사전투표관
리관은 신체적
· 정신적 장애
또는 노령으로
인하여 혼자 기
표절차를 수행
하는 것이 곤란
한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
이 지명한 2인
을 동반하여 투
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
요한 경우 투표
관리관에게 공

④ 사전투표소 설치 장소의 제 한 · 사용 협 조, 설비, <u>사전투표</u> <u>사무원의 추천</u> <u>협조</u> 등에 관하 여는 제147조제 3항부터 제7항 까지, <u>제10항</u> <u>및 제11항을</u> 준 용한다. ⑤ · ⑥ (생 략) 제157조(투표용지 수령 및 기표절 차) ① ~ ⑤ (생략)²⁾ ⑥ 選舉人은 投 票所의 秩序를 해하지 아니하 는 범위 안에서 초등학생 이하 의 어린이와 함 께 투표소(초등	제157조(투표용지 수령 및 기표절 차)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 ----- -----	<u>적보조원 1인</u> <u>또는 2인의 동</u> <u>반을 요청할 수</u> <u>있다.</u> ⑤ ----- ----- ----- -----<u>사전투</u> <u>표사무원의 추</u> <u>천 협조, 공적</u> <u>보조원의 지정</u> <u>및 교육 등</u>--- -----<u>제10</u> <u>항부터 제13항</u> <u>까지를</u>----- --. ⑥ · ⑦ (현행 제5항 및 제6항 과 같음) 제157조(투표용지 수령 및 기표절 차)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 ----- -----	제157조(투표용지 수령 및 기표절 차)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 ----- -----
---	---	---	---

학생인 어린이 의 경우에는 기 표소를 제외한 다)안에 출입할 수 있으며, <u>視 覺 또는 身體 의 障礙로 인 하여 자신이 記票할 수 없 는 選舉人은 그 家族 또는 本人 이 지명한 2人 을 동반하여 投 票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u> ⑦ · ⑧ (생략)	----- ----- ----- ----- ----, <u>시각 또 는 신체적 장애 로 인하여 자신 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 또 는 중증장애인 인 선거인</u>----- ----- -----. ⑦ · ⑧ (현행과 같음)	----- ----- ----- ----- -----신체적 · <u>정신적 장애 또는 노령으로 인하여 혼자 기표절차를 수 행하는 것이 곤란한</u>----- -----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투표관리 관에게 공적보 조원 1인 또는 2인의 동반을 요청할 수 있 다. ⑦ · ⑧ (현행과 같음)	----- ----- ----- ----- ----- -----없 는 선거인과 발 달장애인(「발 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제1호에 따 른 발달장애인 을 말한다)인 선거인은----- -----. ⑦ · ⑧ (현행과 같음)
---	---	---	--

- 2) 「공직선거법」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① 선거인은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운전면허증·공무원증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를 말한다. 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를 받아야 한다.
- ② 투표관리관은 선거일에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때에는 사인날인란에 사인을 날인한 후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련번호지를 떼어서 교부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00매 이내의 범위안

현행법은 병원·요양소 등에 기거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등은 거소투표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⁵⁾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 대해서는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병원·요양소 등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정신적 장애인, 노령자 등의 경우 거소투표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의 적극적인 안내와 도움 없이는 거소투표를 신청하고 투표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거소투표과정에서 직접투표·비밀투표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음.⁶⁾

에서 그 사인을 미리 날인해 놓은 후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③투표관리관은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아니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하나의 政黨을 말한다)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란에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투표참관인의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⑤투표용지를 교부받은 후 그 선거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훼손 또는 오손된 때에는 다시 이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3) 「공직선거법」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⑦제6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기표소안에 2인 이상이 동시에 들어갈 수 없다.

⑧투표용지의 날인·교부방법 및 기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4) “거소투표”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의미함.(출처: 대구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https://blog.naver.com/1390daegu/22338442251>)

5) 「공직선거법」 제38조(거소·선상투표신고)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거소(제6호에 해당하는 선원의 경우 선상을 말한다)에서 투표할 수 있다.

1.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營內)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자

2.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3.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4.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자

5.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

6) 일부 요양원에서는 중증장애인인 당사자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거소투표를 신청해 투표용지를 펼쳐놓

또한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로 인해 투표소 접근 자체가 곤란한 경우에는 투표장 내에서의 자력 투표 역시 현실적으로 어려워, 해당 선거인이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 측면이 있음.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장애인, 노령층 등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투표 보조의 필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투표보조 불허 사건과 관련하여, 사전투표일에 장애인에게 투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차별행위에 해당하고 향후 정당한 편의 미제공에 따른 장애인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달장애인의 투표 실태나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행사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한 바 있으며,⁷⁾

아울러 최근 발달장애인의 투표 보조와 관련한 소송에서 법원은, 「공직선거법」 제157조제6항의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는 발달장애 등 정신적 장애로 인해 스스로 기표할 수 없는 사람도 포함된다고 보았으며, 투표보조를 거부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간접차별 및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⁸⁾⁹⁾

고 “누구에게 찍을 것인가”를 묻은 뒤 요양원 직원이 도장을 들고 일제히 투표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음. (자료출처: 한겨레(2017.4.12.), “230만 장애인 참정권”,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790437.html>)

7) 2021. 3. 26.자 20-진정-0257300 결정 【투표 시 발달장애인에 대한 투표보조 불허】, 국가인권위원회

이에 정희용의원안¹과 서미화·용혜인의원안², 이인영의원안은 현재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게만 적용되는 가족 등의 투표보조를 “중증장애인 및 발달장애인 선거인”, “정신적 장애인, 노령자 등”에게까지 확대하고, 가족 외 공적으로 활동하는 투표보조인을 둬으로써 각종 장애인 및 노령자 등의 선거인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투표보조를 활용한 현장투표를 할 수 있게 하여, 우리 「헌법」¹⁰⁾이 보장하는 선거권을 충실하게 보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다만, 이인영의원안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인용하여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의 규정을 명확히 규정한데 반해, 정희용의원안¹의 경우 지칭하는 “중증장애인”이라는 표현은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상대적으로 불명확하므로 이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 중 “중증장애인”의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 개별법인 「장애인연금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이라 함)」,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중증장애인생산품법”이라 함)」 등에서는 해당 개념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10. 선고 2023가합52091 판결 차별구제청구등’

9) “‘발달장애인도 투표보조 대상’ 장애인 차별구제 항소심서 승소’, 뉴스1, 2025.01.16.

‘발달장애인도 대선에서 투표 보조 받는다...법원, 임시조치 인용’, 조선일보, 2025.06.02.

10) 「대한민국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중증장애인 입법례]

법률명	정의
장애인연금법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u>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u>
장애인고용법 (제2조)	장애인 중 <u>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u>
중증장애인생산품 법 (제2조)	주요 일상생활 활동을 현저히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u>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u>

한편, 공적보조원을 투표소마다 최소 1명에서 2명을 둘 경우 2028년 국회의원선거 기준 14,259~28,518명의 공적보조원을 두게되어, 이들에 대한 임금 등으로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수반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¹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장애인에게 투표보조를 허용할 경우 혼자 기표하기 어려운 장애 선거인의 참정권 보장에는 기여할 수 있으나, 의사표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표보조인의 의사가 개입되어 직접·비밀선거의 원칙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투표관리관이 현장에서 의사결정 능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도 어려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11)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에 따르면, 2028년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소 수와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14,259개소에 14,259명에서 28,518명이 배치되어야 함.

[정희용의원안2], [김소희의원안]

2. 책자형 선거공보물 작성시 수어영상으로 출력되는 바코드 또는 QR코드 표시 의무

정희용의원안2과 김소희의원안은 책자형 선거공보물을 작성하는 후보자에게 선거공보물의 내용이 수어영상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 또는 QR코드를 표시할 의무를 부여하고, 그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며, 추가적으로 정희용의원안2은 바코드 표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현행	정희용의원안2	김소희의원안
제65조(선거공보) ①후보자(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책자형 선거공보 1종(대통령선거에서는 전단형 선거공보 1종을 포함한다)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	제65조(선거공보) ① (현행과 같음)	제65조(선거공보) ① (현행과 같음)

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모두의 사진·성명·학력·경력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16면 이내로,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12면 이내로,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8면 이내로 작성하고, 전단형 선거공보는 1매(양면에 게재할 수 있다)로 작성한다. <후단 신설> ③ ~ ⑭ (생략)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① ·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費	② ----- ----- ----- ----- ----- ----- ----- ----- ----- ----- ----- ----- ----- ----- ② 이 경우 책자형 선거공보에는 그 내용이 수어영상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 ⑭ (현행과 같음)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② ----- ----- ----- ----- ----- ----- ----- ----- ----- ----- ----- ----- ----- ----- ② 이 경우 선거공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수어QR코드를 표시할 수 있다. ③ ~ ⑭ (현행과 같음)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用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候補者를 위하여 부담한다. 이 경우 제3호의2 및 제5호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 ----- -----. ----- ----- -----.	----- ----- -----. ----- ----- -----.
1. (생략) 2. 제65조에 따른 점자형 선거공보(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후보자가 제출하는 저장매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의 작성비용과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 및 같은 조 제9항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를 포함한다) 및 전단형 선거공보의 발송비용과 우편요금	1. (현행과 같음) 2. 제65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수어영상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마코드의 표시비용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 ----- ----- ----- ----- ----- -----	1. · 2. (현행과 같음) 2의2. 제65조제2항에 따른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선거공보의 수어QR코드 제작비용
3. ~ 7. (생략) ④ · ⑤ (생략)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	3. ~ 7. (현행과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3. ~ 7. (현행과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신설>	<u>2의2. 제65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수어영상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책자형 선거공보를 제출한 자</u>
3. ~ 5. (생략)	3. ~ 5. (현행과 같음)
④ ~ ⑫ (생략)	④ ~ ⑫ (현행과 같음)

“선거공보”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후보자가 자신을 알리고 설득하기 위하여 자신의 이름 및 기호, 경력, 정책, 사진 등을 담은 문서로서, 후보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에 따라 작성하고 관할 선거구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 후 유권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됨.¹²⁾

12) 구영산, “선거공보에 대한 고등학생 유권자의 흥미, 이해, 평가”, 청람어문교육(2022), p.104.

[선거공보 예시]

활빈당
제 NN대 국회의원 선거 을도(갑) 국회의원후보
서울동, 인천동, 대구동, 부산동

책자형 선거공보

N번 홍길동



홍길동이 한 일






나는 홍길동입니다.
나는 동네를 위해 일했습니다.

나는 휠체어 농구 대회를 만들었습니다.

나는 ○○ 고등학교를 지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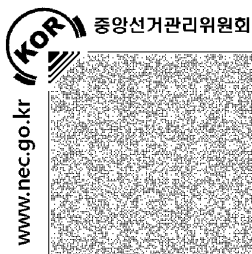
나는 ○○초등학교 앞에 신호등을 만들었습니다.

나는 공장에서 나쁜 공기가 나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보 제작 가이드”(2023.10.)

현행법은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경우 선거공보를 작성할 때 반드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용 선거공보도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점자용 선거공보를 대신하여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¹³⁾ 표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¹⁴⁾

13)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 생김새는 다음과 같음.



14) 「공직선거법」 제65조(선거공보) ④후보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거공보 외에 시각장애선거인(선거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시각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위한 선거공보(이하 “점자형 선거공보”라 한다) 1종을 제2항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의 두 배 이내에서 작성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되,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그런데, 청각장애인의 경우 제1언어가 한국어가 아닌 한국수어¹⁵⁾로서 제1언어로 한국어를 사용하는 비장애인과는 달리 한글 이해력이 다소 부족한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글로만 만들어진 선거공보 물로는 후보자의 공약이나 정치 비전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¹⁶⁾

[시각·청각장애선거인에 대한 현행 선거공보 규정]

구분	대통령 선거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지자체장 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선거
시각장애선거인	의무적으로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 (책자형 선거공보에 바코드 표시로 대체 가능)			재량사항
청각장애선거인	비장애인과 동일한 책자형 선거공보 제공			

이에 정희용의원안²과 김소희의원안은 모든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수어영상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 또는 QR코드를 표시하도록 하고, 그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청각장애인의 후보자에 대한 알 권리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15) “수어”란 손짓으로 의미를 전달하는 보이는 언어이고, “한국수어”란 우리나라 청각장애인이 사용하는 고유한 형식의 수어로서 한국수어와 한국어는 문법 체계가 다른 별개의 언어임. 청각장애인에게 한국어는 외국어에 가까움. (자료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4.2.2.), “수어와 다양한 문화의 포용, 2월 3일은 한국수어의 날”,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5488>)

16) 아시아타임즈(2022.5.30.), “선거 사각지대①] 유권자지만 소외받는 ‘청각장애인(농인)’”, https://www.asiatime.co.kr/article/20220530500151#_enliple#_mobwcvr

다만, 개정안은 후보자에게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할 의무와 의무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는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실효성” 측면에서 책자형 선거공보의 작성은 재량사항으로 임의로 작성·제출하는 것인데, 의무작성 대상이 아닌 책자형 선거공보에 수어영상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 또는 QR코드를 표시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청각장애인의 알 권리 제고에 적절한 조치인지 검토가 필요함.

현행법상 선거공보는 기본적으로 모든 선거에 적용되는 책자형·점자형과 대통령선거에만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전단형으로 나뉘는데, 의무작성 대상인 점자형 선거공보는 책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하지 않아도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하도록(책자형에 바코드 표시로 대체하는 것도 가능) 규정한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상 선거공보 종류]

구분	대통령 선거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지자체장 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선거
책자형(§65①)	임의작성			
점자형(§65④)	의무작성 (책자형에 바코드 표시로 대체 가능)			임의작성
전단형(§65①)	임의작성	작성불가		

둘째, “비용부담” 측면에서 점자형 선거공보 및 김소희의원안의 경우 그 “작성비용” 및 “제작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는데 반해, 정희용의원안²은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의 “표시비용”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하여, 후보자의 비용부담 우려가 클 것으로 보임.

특히, 현재 점자형 선거공보를 대체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프로그램(VOICE)¹⁷⁾을 통해 무료로 제작할 수 있는데 반해, 수어영상을 출력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제작하는 프로그램은 아직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수어영상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는 후보자가 개별적으로 수화통역사를 통해 제작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선거공보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QR코드를 표시하는 경우, 2028년 5억 7,200만원, 2030년 45억 7,2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51억 4,400만원(연평균 10억 2,900만원)이 소요됨.

1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는 선거공보의 내용을 음성으로 변환해주는 프로그램으로서, 별도의 인터넷 연결 없이 바코드 자체에 문자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제작되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문서를 열람할 수 있음. 특히, 전용 리더기 또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보이스아이)을 통해 스캔하면, 저시력 시각장애인을 위한 문자확대 및 고대비(문자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문자색과 배경색을 조정) 기능, 전맹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출력 기능을 활용할 수 있음.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7	2028 (국선)	2029	2030 (대전·지선)	2031	합계	연평균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수어QR코드 작성 (안 제65조제2항 등)	-	572	-	4,572	-	5,144	1.029

주: 1.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수어QR코드 작성(안 제65조제2항 등)은 재량규정 재정수반요인으로서 일정 예산의 편성을 전제하고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2. 본 추계에서는 개정안에 따라 공직선거 후보자들이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선거공보 내용을 수어통역사가 전달하는 영상을 제작하고 책자형 선거공보에 QR코드로 인쇄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셋째, “불이익처분” 측면에서 정희용의원안2은 수어영상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 표시의무 위반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해당 액수가 적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액수를 정하는 것은 그 정도가 헌법상 원칙에 반하여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이지 않다면 입법권자의 재량에 속함.¹⁸⁾

헌행법상 과태료(제261조)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부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부과되고 있으며,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의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¹⁹⁾하고 있음.

18) [헌법재판소 1998.5.28. 선고 96헌바83]

“입법권자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과하기로 하였다면, 다시 그 과태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도 역시 그것이 의무위반행위와 그에 대한 책임이 현저하게 균형을 잃게 되고 이로 인하여 다른 행정법규 위반자와의 사이에서 헌법상의 평등의 원리에 위반하게 된다거나 그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함으로써 헌법 제37조 제2항으로부터 파생되는 비례의 원칙 혹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등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입법재량을 현저히 불합리하게 또는 자의적으로 행한 것이라 단정할 정도로 높지 않은 한 입법재량에 속하는 문제라 할 것이다.”

19) 「공직선거법」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한국수어영상 QR코드 제작비용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부담 여부는 청각장애선거인과 비청각장애선거인 간 형평성 및 제도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 ‘수어 QR코드’에 수어 영상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기 위한 용어 정비와 함께, 관련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이 아닌 공직선거관리규칙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투표시간을 보장하여 주지 아니한 자
 2. 제59조제2호 후단을 위반하여 신고한 전화번호가 아닌 전화번호를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하여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람
 3. 제65조제4항 단서를 위반하여 점자형 선거공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
- (생략)

[정희용의원안3]

3. 선거방송의 수어·자막 방영 의무화

정희용의원안3은 후보자의 방송광고 등에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한국수어 또는 자막을 방영하는 것을 현행 “임의규정”(할 수 있다)에서 “의무규정”(하여야 한다)으로 변경하고, 해당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현행	정희용의원안3
第70條(放送廣告) ① ~ ⑤ (생략) ⑥ 候補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放送廣告에 있어서 聽覺障礙選舉人을 위한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 또는 자막을 <u>방영할 수 있다.</u> ⑦ · ⑧ (생략)	第70條(放送廣告)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u>방영하여야 한다.</u> ⑦ · ⑧ (현행과 같음)
第72條(放送施設主管 候補者演說의 放送) ① (생략)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候補者 演說의 放送에 있어서는 聽覺障礙選舉人을 위하여 한국수어 또는 자막을 <u>방영할 수 있다.</u> ③ · ④ (생략)	第72條(放送施設主管 候補者演說의 放送) ① (현행과 같음) ② ----- ----- -----<u>방영하여야 한다.</u>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 ③ (생략) ④ 제147조제3항(제148조제4항 및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u>제173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u> ⑤ ~ ⑫ (생략)	<u>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u> 1. <u>제70조제6항(제71조제3항 및 제137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72조제2항(제73조제4항·제74조제2항 및 제8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한국수어 또는 자막을 방영하지 아니한 자</u> 2. <u>제147조제3항(제148조제4항 및 제173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u> ⑤ ~ ⑫ (현행과 같음)
---	---

현행법은 후보자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방송광고(제70조),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제72조) 등을 실시할 때,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한국수어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한국수어 또는 자막의 방영은 의무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후보자연설의 방송 등이 한국수어로 통역되거나 자막이 제공되는 경우가 적어 청각장애선거인이 후보자들의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²⁰⁾

20) 지방선거기간 동안 후보들의 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그 정보들이 수어로 통역되는 비율은 5%에 불과하다는 언론보도가 있음. (자료출처: 아시아타임즈(2022.5.30.), “선거 사각지대① 유권자지만 소외받는 청각장애인(농인)”)

이에 **정희용의원안3**은 후보자의 방송광고 등에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한국수어 또는 자막 방영을 현행 “임의규정(할 수 있다)”에서 “의무규정(하여야 한다)”으로 변경하고, 해당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수어·자막 관련 규정]

구분		현행	개정안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	§70⑥	수어 또는 자막 방영 <u>재량</u> 규정	<u>수어 또는 자막</u> 방영 <u>의무화</u>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 방송	§72②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70⑥ 준용)	§71③	준용규정 (수어 또는 자막 방영 <u>재량</u>)	
정강·정책의 방송연설 (§70⑥ 준용)	§137의2⑥		
경력방송(후보자 사진·성명·주요 경력 등 알림) (§72② 준용)	§73④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72② 준용)	§74②		
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72② 준용)	§82④		
후보자의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	§79	규정없음	현행과 같음
단체에서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81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합동방송연설회 포함)	§82의2⑫	수어 또는 자막 방영 <u>의무</u> 규정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 (§82의2⑫ 준용)	§82의3②	준용규정 (수어 또는 자막 방영 <u>의무</u>)	
정당의 정책토론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비선거기간) (§82의2⑫ 준용)	정당법 §39③		

한국수어(자막) 방영 규정을 의무화하여 해당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통해 청각장애선거인의 알 권리와 참정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임.

다만, **정회용의원안3**은 후보자, 방송시설, 언론기관 등에 한국수어 또는 자막을 방영할 의무와 의무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는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비용부담” 측면에서 한국수어 또는 자막을 의무화하는 경우 방송광고, 방송연설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후보자, 방송시설 등의 비용부담²¹⁾ 우려가 클 것으로 보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① 후보자토론회에서 한국수어통역방송을 실시할 경우 수어통역사에게 30분당 15만원의 사례금을 지급한 바 있으며, ② 자막방송의 경우 「선거방송토론 사무편람(2024)」에 따라 제작단가가 분당 약 2천원 내외로 산정됨.²²⁾

이와 관련해 한국방송협회는 입법취지는 공감하나, 임의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은 방송사업자 보도·편성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방송사의 기술적·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개정안으로 인해 광고에서 전달하려는 핵심 정보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²³⁾ 청각장애선거인의 참정권 보호를 위한 보다

21) 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를 위하여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되었으나, 비용추계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황임.

22) 이와 관련한 구체적 사항은 참고자료 참조

23) 광고주가 제작한 광고 영상에 방송사가 임의로 수어 화면을 넣을 경우 광고주 측이 광고를 통해 전달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²⁴⁾ 등을 감안하여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입장임.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후보자 선거방송에서 수어 또는 자막 방영을 임의규정으로 정한 현행법 규정이 청각장애인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이유로 낸 헌법소원에서 “수어·자막방송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할 경우 선거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될 수 있고, 방송사업자의 보도·편성의 자유와 후보자·정당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할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합헌이라고 판시한 바 있음²⁵⁾.

하려는 정보와 이미지가 가려져 방해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후보 또는 정당, 광고주 측이 광고 영상에 수어를 넣어 제작하도록 하고 방송사는 이를 송출하는 방식으로 개정안의 세부 조항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한국방송협회 의견임. 아래는 수어 화면을 넣기 전과 후의 비교 예시임.



24) 청각장애인 시청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의무를 지우기보다 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수어방송 또는 AI기반 아바타 수어방송에 대한 정부 투자와 지원을 확대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실효적이라는 것이 한국방송협회 의견임.

25) 다만, 재판관 이선애, 이석태, 김기영의 반대이견으로서 ① 한국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여 국어를 읽고 이해하기 어려운 청각장애인은 청각적 방법으로 선거정보를 취득하기 어려우므로 보편적 매체인 텔레비전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선거방송에서는 한국수어·자막을 제공할 필요성이 크고, ② 장애인방송 고시상 장애인방송 편성비용 준수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방송사업자들은 한국수어·자막방송을 할 수 있는 인력, 설비나 기술수준을 이미 확보하고 있으므로,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거나 보도·편성의 자유 및 선거운동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게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과도한 조치는 아니라는 의견도 있었음.

[헌법재판소 2020.8.28. 선고 2017헌마813 판결]

방송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그 하위규범을 통하여 청각장애인에 대한 선거정보의 제공 의무화가 특히 자막방송의 경우에는 규범적으로 상당 부분 구현되어 있다. 장애인방송고시에 의하여 자막방송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방송광고의 경우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정당이 한국수어 또는 자막방송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사정이 있고, 고시의무사업자가 아닌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의 경우 한국수어 또는 자막방송의 비용을 전부 부담할 능력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제도개선을 하는 과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방송고시에서 일정 비율 한국수어방송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고, 적어도 최근 전국단위 주요 선거에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방송은 100% 한국수어 방송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임의규정으로 있는 이 사건 한국수어·자막조항으로 인하여 청각장애선거인이 선거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얻을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선거방송을 제작하는 방송사업자 등이 한국수어·자막방송을 할 수 있는 인력, 장비 및 기술수준 등을 갖추었거나 갖추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한국수어·자막방송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어서, 한국수어·자막방송의 실시 여부가 반드시 이 사건 한국수어·자막조항의 수범자의 의사에 따라서만 결정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할 경우 선거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될 수 있고, 방송사업자의 보도·편성의 자유와 후보자·정당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할 여지가 있다. 이 사건 한국수어·자막조항이 한국수어 또는 자막의 방영을 재량사항으로 규정한 것은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헌재 2009. 5. 28. 2006헌마285 참조).

한편 청각장애선거인들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문자메시지 전송(제59조 단서 제2호),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제59조 단서 제3호), 예비후보자 홍보물, 공약집(제60조의3 제1항 제4호, 제60조의4), 명함(제60조의3 제1항 제2호, 제2항, 제93조 제1항 단서 제1호), 선거사무소의 간판 등(제60조의3 제1항 제1호, 제61조 제6항, 제61조의2 제4항), 선거벽보(제64조), 책자형 선거공보(제65조), 책자형 선거공약서(제66조), 현수막(제67조), 어깨띠 등 소품(제60조의3 제1항 제5호, 제68조), 신문광고(제69조), 인터넷광고(제82조의7) 등의 선거운동과 인쇄매체나 인터넷언론사의 보도 등을 통해서 선거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한국수어·자막조항이 청구인 김□□, 함○○의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둘째, “불이익처분” 측면에서 정희용의원안³은 한국수어 또는 자막 방영의무 위반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해당 액수가 적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액수를 정하는 것은 그 정도가 헌법상 원칙에 반하여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이지 않다면 입법권자의 재량에 속함.²⁶⁾

26) [헌법재판소 1998.5.28. 선고 96헌마83]

참고로, 현행법상 과태료(제261조)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부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부과되고 있는데, 과태료 구간별 의무위반사항은 다음과 같음²⁷⁾.

[현행법상 과태료 구간별 의무위반사항(법 제261조)]

구분		의무위반사항(예시)
제1항	5천만원 이하	· 재산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선거인 등을 매수하거나 이해유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금품등을 요구한 경우
제2항	3천만원 이하	· 시정명령·정정보도문의 게재명령을 통보받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지 아니한 경우
제3항	1천만원 이하	· 고용주가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여 주지 않은 경우 ·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4항	5백만원 이하	·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소의 설치 관련 협조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제6항	3백만원 이하	· 방송광고, 방송연설 등과 관련된 규정을 위반한 경우 · 현행법인 또는 준현행법인으로서 동행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제7항	2백만원 이하	· 선거에 관해 현행법이 규정하는 신고, 제출 의무를 해태한 경우 · 투표용지모형을 훼손, 오손한 경우
제8항	1백만원 이하	· 참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 여론조사 기관 변경등록 신청의무를 위반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청각장애인의 선거정보 접근권을 확대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수어 또는 자막 방영 의무화 여부는 전문수어통역사 인력 현황, 정당·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 방송사업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임.

“입법권자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행정질서별인 과태료를 과하기로 하였다면, 다시 그 과태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도 역시 그것이 의무위반행위와 그에 대한 책임이 현저하게 균형을 잃게 되고 이로 인하여 다른 행정법규 위반자와의 사이에서 헌법상의 평등의 원리에 위반하게 된다거나 그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함으로써 헌법 제37조 제2항으로부터 파생되는 비례의 원칙 혹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등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입법재량을 현저히 불합리하게 또는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이라 단정할 정도로 높지 않은 한 입법재량에 속하는 문제라 할 것이다.”

27) 한국수어 또는 자막 방영을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조항(제82조의2제12항, 제82조의3제2항) 위반에 대해서는 벌칙 또는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이는 해당 의무의 주체가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기 때문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대담, 토론회에서는 한국수어 또는 자막방영을 100% 실시하고 있음.(미실시 없음)

4. 장애인 투표소 접근 편의 보장 규정 명문화

정희용의원안3은 투표소에 점자유도블럭²⁸⁾ 등 장애인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제반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제반 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투표사무원으로 하여금 장애인의 투표소 이동을 보조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정희용의원안3
第147條(投票所の 設置) ① ~ ⑩ (생략) <u><신설></u> ⑪ 투표소의 설비, 고령자·장애인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제반 시설의 설치, 적절한 투표소 위치 확보 등의 조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第147條(投票所の 設置) ① ~ ⑩ (현행과 같음) ⑪ <u>투표소에는 점자유도블럭 등 장애인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제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투표소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제반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투표사무원을 배치하여 장애인의 투표소 이동을 보조하여야 한다.</u> ⑫ (현행 제11항과 같음)

28) “점자유도블럭”이란 시각 장애인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바닥에 설치한 울퉁불퉁한 블록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김새는 다음과 같음.



현행법에 따르면 투표소는 투표구 안의 학교, 읍·면·동사무소 등 관공서,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주민회관 기타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하도록 하며,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제반 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공직선거관리규칙」을 통해 정하도록 하고 있음.²⁹⁾

법률의 위임에 따라 마련한 「공직선거관리규칙」은 투표소를 이동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하여 1층 또는 승강기 등의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 설치하도록 하되, 적절한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투표소 입구에 이동약자를 보조할 투표사무원 등을 배치하거나 임시 기표소를 설치하는 등 이동약자가 투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³⁰⁾

정희용의원안³은 시행령인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하고 있던 사항과 장애인의 선거권 행사를 위하여 국가가 취하여야 할 보편적 의무사항을 법률로 명시하려는 것으로, 장애인의 투표소 접근 편

29) 「공직선거법」 제147조(투표소의 설치) ② 투표소는 투표구안의 학교, 읍·면·동사무소 등 관공서,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주민회관 기타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한다. 다만, 당해 투표구안에 투표소를 설치할 적당한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다른 투표구안에 설치할 수 있다.

⑪ 투표소의 설비,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와 격리자등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제반 시설의 설치, 적절한 투표소 위치 확보 등의 조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30) 「공직선거관리규칙」 제67조의2(투표소의 설치 및 설비) ① 투표소는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이동약자(이하 이 조에서 “이동약자”라 한다)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하여 1층 또는 승강기 등의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원활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투표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투표소 입구에 이동약자를 보조할 투표사무원 등을 배치하거나 임시 기표소를 설치하는 등 이동약자가 투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의 보장의무를 하위법령이 아닌 법률로 명문화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성 증대와 장애인의 권리보호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현행법령과 개정안의 비교 》

현행	개정안
「공직선거법」 第147條(投票所의 設置) ⑪ 투표소의 설비,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와 격리자등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제반 시설의 설치, 적절한 투표소 위치 확보 등의 조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67조의2(투표소의 설치 및 설비) ① 투표소는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이동약자(이하 이 조에서 "이동약자"라 한다)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하여 1층 또는 승강기 등의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원활한 투표 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투표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투표소 입구에 이동약자를 보조할 투표사무원 등을 배치하거나 임시 기표소를 설치하는 등 이동약자가 투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第147條(投票所의 設置) ⑪ 투표소에는 점자유도블럭 등 장애인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제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투표소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제반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투표사무원을 배치하여 장애인의 투표소 이동을 보조하여야 한다.

현행법은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³¹⁾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도록 규정³²⁾하고 있음을 볼 때 장애인의 투표소 접근성 보장 의무를 명시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임.

참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부분의 투표소는 사회기반시설을 임차하여 임시로 설치·운영되므로 제반시설을 설치하는 것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어르신·장애인·임산부 등에 대한 안내 및 투표 편의 제공을 위하여 투표소마다 선거사무원 중 2인을 투표안내요원으로 배치하고 있으며, 사전에 장애인단체·정당 등의 협조를 얻어 공동으로 장애인 투표 편의시설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편의시설이 불비·미비한 투표소에는 임시경사로를 설치하고 있다는 입장임.

31)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①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7조(참정권)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이 선거권, 피선거권, 참정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 전달,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보조원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에게 후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정도의 수준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참고 1 한국수어통역방송 및 자막방송 제공시 소요비용 관련

□ 한국수어통역 사례금 지급기준

-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최근 수립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토론회 관리지침’(중앙토론위-332, 2024. 1. 31.)의 기준에 따라 한국수어통역 방송을 실시할 경우, 수어통역사에게 **30분당 15만원의 사례금을 지급**하고 있음.

※ 한국수어통역사 사례금 지급 기준(협회지급 불가)

- 1회 기준 단가: 30분당 15만원(30분 이하라도 15만원)
- 2인 교대 시 총 시간 대비 수어통역시간 비율로 사례금 지급

- 지급기준은 2022년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수어통역센터 중앙 지원본부’의 ‘수어통역사 수당 재검토 요청’(중앙토론위-1160, 2022. 4. 26.)에 따른 것으로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님.

※ 한국농아인협회 이외에도 한국수어통역사협회 등의 단체가 있으나, 「비영리민간 단체 지원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등록·관리하는 한국농아인협회의 기준을 따름.

- 현재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 및 후보자토론회 개최 시에도 같은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음.

(120분 토론회 기준 1시간씩 2인 교대 운용 시 1인당 30만원 지급)

- 위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면 방송연설 및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정당의 정강·정책의 방송연설 등에 한국수어통역방송을 실시할 경우 동일하게 **30분당 15만원(30분 이하 역시 동일)의 금액을 산정할 수 있을 것임.**

단, 해당 비용은 협회의 기준이나 시장 단가, 해당 기관 및 방송사의 자체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덧붙임 한국농아인협회 수어통역 요율표(참고 2)

□ 자막방송 관련 비용 기준

-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자막방송과 관련하여 ‘선거방송토론 사무편람(2024)’의 기준을 따름.

※ 선거방송토론 사무편람(2024)

라. 자막방송 지급 기준

구 분		본 사	지 역	비 고
공영 방송사	KBS	무료	분당 1,765원* 이내	2개 이상의 중계방송사가 동시에 실시한 경우, 각각 지급
	MBC	분당 2,240원	MBC 본사 지급기준 이내에서 지역방송사와 협의	
지상파방송사, 종합유선방송사		MBC 본사 지급기준 이내에서 중계방송사와 협의		

* ‘장애인방송물 평균제작비 산정결과 공고’(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 2022. 10.)

※ 위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중계방송사의 청구를 받아 지급하되, 이후 분당 단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중계방송사와 협의하여 지급

-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는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방송통신위원회 고시-제2022-17호, 2022. 12. 20.)」 제10조제3항제5호에 따라 장애인방송물의 평균 제작단가를 매년 말 공고하고 있어,
- 2024년 선거방송토론 사무편람 개정 시 이를 기준으로 일부 반영한 것임.
※ KBS는 대부분 해당 평균 제작단가 이내로 자막방송비용을 산정하고 있으며, MBC는 본사의 외주업체 비용을 기준으로 함.
- 이와 관련하여 자막방송은 대부분의 방송사가 외주업체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고, 시장 가격도 차이가 있어 평균적인 비용 산출에는 한계가 있으나,
- 공영방송사의 단가를 평균하여 봤을 때 분당 약 2천원 내외로 책정할 수 있을 것임.
단, 예상 금액일 뿐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참고 2 한국농아인협회 수어통역 요율표(2022년)

[별표 1]

[수어통·번역 및 수어교육 수당기준표 I]

수당은 통역사 1명 기준(단위 : 원)

구 분		기 준	수 당	비 고
행 사	국 내	체육대회	100,000	- 행사는 최소 2인의 통역사 배치. - 전국구와 지역행사는 차등적용. - 행사규모나 동선에 따라 인원조정 하여 배치하며 초과 시간에 대해서는 협의. - 지역에 따라 식비, 교통비, 숙박비 는 별도 지급. - 리허설도 통역으로 간주 - 사전 시나리오등 정보 공유 필수.
		장애시설	70,000	
		의료기관	200,000	
		회의 및 면접	150,000	
		강연 및 세미나	200,000	
		문화	150,000	
		공연/연극	200,000	
		전시 및 박람회	100,000	
		마케팅	500,000	
		워크숍	200,000	
		각종 기념식	200,000	
		발표회	150,000	
		장애인영화제	100,000	
		학교	150,000	
		기업	300,000	
		홍보물 제작	30분/건당 1,000,000	
	여행	1일 8시간	300,000	- 규모에 따라 통역사 배치인원 조정. - 여행경비 별도 및 통역에 필요한 물품 제공. - 최소 2인 이상 배치.(출발일, 도착일 일정 포함) - 항공료, 숙박 및 식대 별도 지급.
	해외	1일	500,000	
	기타	1시간	100,000~150,000	
공공 기관	경찰서	1시간	50,000	- 법원 통역요율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식대, 교통비 별도.
	검찰청		70,000	
	법원일반심리	1회 심리	50,000	
	지방/가정법원	1회 재판	70,000	
	고등법원		100,000	
	대법원		150,000	
선 거	공개유세	전당대회	500,000	1회당 2명 배정. 1시간당 산정금액이며 3시간 초과는 협의. -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등.(1시간당) - 후보 1인 10분 이내. - 홍보시간 5분 내외. 30분이내 1편당.
		거리유세	200,000	
	방송	공개토론회	300,000	
		선거방송 후보연설	300,000	
		홍보 1편당(다회송출)	500,000	
		유튜브 1편	300,000	
번 역	기관	한국어↔수어 10분 기준	150,000	난이도에 따라 차등요율제 적용.
	방송		200,000	
	법률/법원		200,000	
	감수 및 평가	수어↔한국어	150,000	
	영상물 음성통역	10분 기준	200,000	

5.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의 점자형 선거공보 같음규정 삭제 등

현행	김예지의원안1
제65조(선거공보) ① ~ ③ (생략)	제65조(선거공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후보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거공보 외에 시각장애선거인(선거인으로서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시각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위한 선거공보(이하 “점자형 선거공보”라 한다) 1종을 제2항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의 두 배 이내에서 작성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되,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④ ----- ----- ----- ----- ----- ----- ----- ----- ----- ----- ----- -----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되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음.

최근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에서 후보자 중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제출 비율은 전체 후보자 중 최저 19%에서 최대 96%에 이르는데 비해,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 작성 제출 비율은 전체 후보자 중 최저 0.2%에서 최대 14%인 것으로 나타난 바, 이는 후보자들이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 제출 보다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을 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됨.

[최근 공직선거 점자형 선거공보 등 작성·제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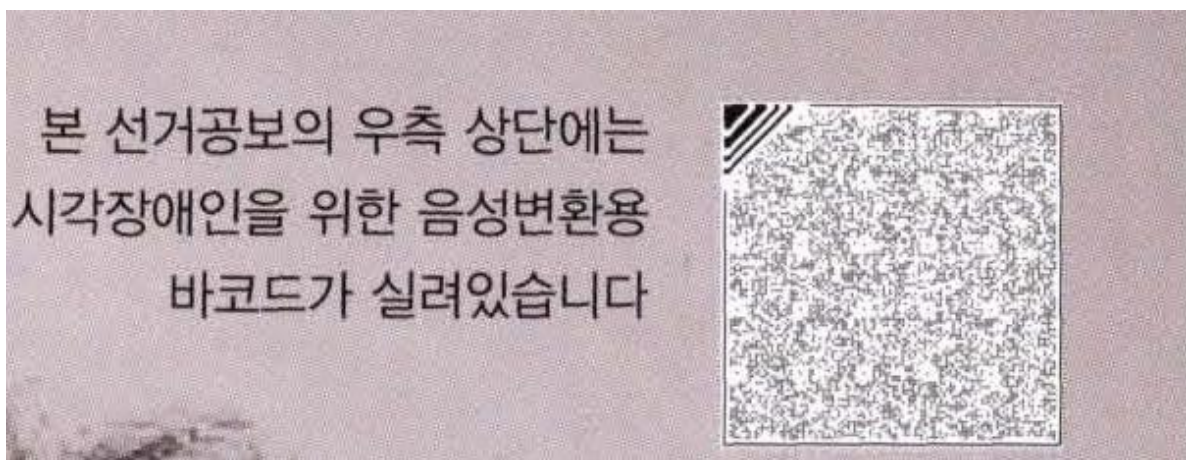
(단위: 명, %)

구 분		후보자수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제출비율)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 (작성·제출비율)	디지털파일 저장매체 (작성·제출비율)
제20대 대통령선거		14	11 (79%)	2 (14%)	10 (71%)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시·도지사	55	53 (96%)	2 (4%)	35 (63%)
	교육감	59	54 (92%)	4 (7%)	32 (54%)
	기초지자체장	570	511 (90%)	53 (9%)	89 (16%)
	광역의원 (지역구)	1,432	483 (34%)	10 (1%)	52 (4%)
	기초의원 (지역구)	4,139	766 (19%)	8 (0.2%)	128 (3%)
	비례광역의원	97	77 (79%)	7 (7%)	50 (52%)
	비례기초의원	379	188 (50%)	2 (0.5%)	74 (20%)
제22대 국회의원선거		737	666 (90%)	53 (7%)	406 (55%)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는 글을 보거나 읽기 어려운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것으로 2차원 바코드를 이용해 텍스트 정보를 바코드에 저장한 뒤, 스마트폰 어플이나 인쇄물 음성 변환 출력기를 통해 음성으로 바꿔 들을 수 있는 수단임.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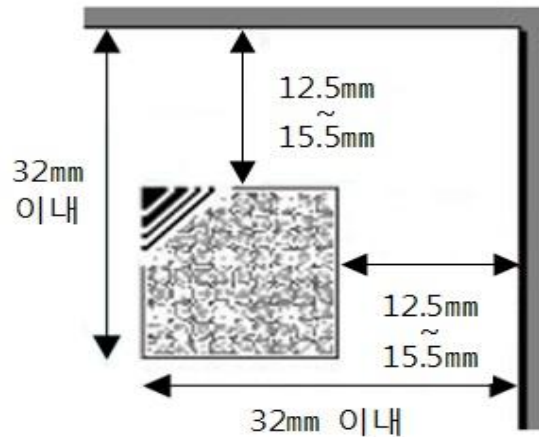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는 책자형 선거공보 표지 우측 상단 모서리에 위치하며, 매 홀수면 상단에도 있음.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보이스아이)을 통해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인식하면 바코드가 위치한 페이지의 내용이 스마트폰 화면에 문자와 숫자로 표시되고, 문자와 숫자를 확대하여 볼 수 있음. 또한 음성을 통해 해당 내용을 들을 수도 있음.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 작성 방법

※ 시각장애인의 인쇄물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점자·음성 변환용 코드
활용지침

[방송통신위원회 국립전파연구원]



< 표기 예시 >

- 모양 : 정사각형
- 크기 : 가로와 세로 크기를 최대 18mm×18mm 이내로 함
[권장 크기 15mm×15mm]
- 위치 : 책자형 선거공보 표지(1면) 우측 상단 모서리를 기준으로 가로×세로 32mm 크기의 정사각형 내에 위치하도록 함.

※ 매 홀수면 우측상단에 표시

※ 해상도 : 최소해상도 300DPI[권장 해상도 600DPI]

※ 색상 : 바코드 색상과 바탕색 구분을 위해 바코드 외곽 테두리 1mm 이상을 흰색으로 적용

※ 코드 저장 데이터 : 문자와 숫자가 포함된 텍스트 형태로 저장

☞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에 저장되는 데이터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음성으로 변환되어 출력되므로 반드시 문자와 숫자가 포함된 텍스트 형태로 저장되어야 함.

그런데, 후보자가 점자형 선거공보를 대신하여 표시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의 경우, 바코드를 음성변환 출력기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야 함에 따라 정보 접근성이 제약되고 음성으로만 정보가 제공되어 정보 전달의 정확성이 떨어지므로 시각장애선거인의 참정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김예지의원안¹은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제출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시각장애선거인의 알 권리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개정안과 같이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로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제출을 갈음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할 경우 대통령선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모두 점자형 선거공보를 의무적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점자출판시설 증설 등 점자형 선거공보 인쇄물량 증가에 대비하는 조치 없이 대체 수단을 제외하는 것은 오히려 시각장애선거인의 정보접근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따라서, 개정안의 내용은 먼저 점자형 선거공보 인쇄시설의 증설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 후 도입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6.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을 디지털 파일로 전환하여 저장한 저장 매체 제출 의무화 등

김예지의원안1은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을 디지털 파일로 전환하는 경우 디지털파일의 형식을 문자로만 구성된 파일로 제한하고, 대통령 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는 디지털 파일이 저장된 저장매체의 제출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현 행	김예지의원안1
제65조(선거공보) ① ~ ③ (생략)	제65조(선거공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후보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거공보 외에 시각장애선거인(선거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시각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위한 선거공보(이하 “점자형 선거공보”라 한다) 1종을 제2항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의 두 배 이내에서 작성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되, <u>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u>	④ ----- ----- ----- ----- ----- ----- ----- ----- ----- -----한다.
⑤ ~ ⑩ (생략)	⑤ ~ ⑩ (현행과 같음)

⑪ 후보자가 시각장애선거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을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로 전환하여 저장한 저장매체를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를 포함한다)와 같이 제출하는 경우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함께 발송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신 설>

⑫ ~ ⑭ (생 략)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 ~ ④ (생 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2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 4. (생 략)

5. 제64조제8항(제65조제13항 및 제66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선거벽보·선거공보 또는 선거공약서의 수량을 넘게 인쇄하여

⑪ 후보자는-----

-----파일(문자로만 구성된 파일에 한한다)-----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제출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전단에 따른 저장매체를 책자형 선거공보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⑫ 후보자가 제11항에 따른 저장매체를 제출한 경우 책자형 선거공보를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함께 발송하여야 한다.

⑬ ~ ⑮ (현행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와 같음)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1. ~ 4. (현행과 같음)

5. -----제65조제14항-----

제공한 자 6. ~ 12. (생략)	6. ~ 12.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선거공보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후보자등록개시일이 도래하는 선거부터 적용한다.
-----------------------------------	--

현행법은 후보자로 하여금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이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로 전환하여 저장한 저장매체를 책자형 선거공보와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디지털 파일의 형식에 관한 별도의 기준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후보자마다 제출하는 디지털 파일의 형태가 다양하여 오히려 시각장애선거인의 불편을 야기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음.

이에, **김예지의원안1**은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을 디지털 파일로 전환하는 경우 디지털파일의 형식을 문자로만 구성된 파일로 제한하고,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는 디지털 파일이 저장된 저장매체의 제출을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시각장애인선거인의 알 권리를 제고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개정안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에 따라 디지털 파일의 작성방법을 문자 형식으로 제한할 경우 PC, 점자정보단말기 등 다양한 기기를 통해 정보를 열람하고자 하는 시각장애 선거인의 선택권을 축소할 소지도 있음.

이와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에 디지털 파일 제출 시 시각장애선거인이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작성하도록 그림파일을 제외하거나 대체텍스트로 입력하고, 문자·음성·DAISY(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오디오·텍스트 동시 제공) 등 형식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또한, 디지털 파일 저장매체 제출제도 도입 직후 2021년 재·보궐선거 및 2022년 대통령선거 및 전국동시지방선거 시 시각장애인 권익옹호 단체 중심으로 저장매체(USB)가 컴퓨터 등에서 인식되지 않거나 저장된 파일을 불러오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 일부 후보만이 USB를 제공하여 후보자에 대한 알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시각장애선거인의 선호를 고려하여 저장매체 제출 의무화를 포함한 개정안의 입법화와 관련하여서는 시각장애선거인의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선거공보와 함께 발송되는 점을 고려할 때 저장매체(USB)를 제공하기보다 선거공보에 QR코드를 삽입하여 디지털 파일만 제공하는 형태가 보다 적합하다는 입장임.

[주호영의원안]

7.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보 작성 근거 마련 등

주호영의원안은 후보자가 시각장애 이외의 장애가 있는 선거인을 위하여 음성, 점자 또는 수화로 제작된 선거공보나 선거공약 등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된 선거공보 등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주호영의원안
제65조(선거공보) ① ~ ③ (생략)	제65조(선거공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후보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거공보 외에 시각장애선거인(선거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시각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위한 선거공보(이하 “점자형 선거공보”라 한다) 1종을 제2항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의 두 배	④ ----- ----- ----- ----- ----- ----- -----

이내에서 작성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되,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⑤ ~ ⑦ (생략)

⑧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를 포함한다)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내용(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정보공개자료”라 한다)을 그 둘째 면에 게재하여야 하며,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대하여 소명이 필요한 사항은 그 소명자료를 함께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둘째 면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와 그 소명자료만을 게재하여야 하며, 점자형 선거공보에 게재하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내용은 책자형 선거공보에 게재하는 내용과 똑같아야 한다.

1. ~ 5. (생략)

-----있으며, 시각장애 외의 장애가 있는 선거인을 위하여 음성, 점자 또는 수화로 작성된 선거공보나 선거공약 등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된 선거공보 등(이하 “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라 한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 -----.

⑤ ~ ⑦ (현행과 같음)

⑧ -----

-----하고, 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내용을 선거공보에 포함하여야 하며-----점자형 선거공보 및 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에-----

-----.

1. ~ 5. (현행과 같음)

⑨ ~ ⑭ (생략) 제66조(선거공약서) ① ~ ⑦ (생략) ⑧ 제64조제3항·제8항 및 제65조 제4항(단서는 제외한다)은 선거공약서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벽보” 또는 “책자형 선거공보”는 “선거공약서”로, “작성하여 보관 또는 제출할”은 “작성할”로, “점자형 선거공보”는 “점자형 선거공약서”로 보며, 점자형 선거공약서는 선거공약서와 같은 종류로 본다. ⑨ (생략)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① ·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費用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候補者를 위하여 부담한다. 이 경우 제3호의2 및 제5호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1. (생략) 2. 제65조에 따른 점자형 선거공보(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후보자가 제출하는 저장매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작성비용과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 및 같은 조 제9항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포함한다) 및 전단형 선거공보의 발송비용	⑨ ~ ⑭ (현행과 같음) 제66조(선거공약서)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제65조 제4항 본문 중 점자형 선거공보에 관한 규정은----- -. ----- ----- ----- ----- ----- -----. ⑨ (현행과 같음)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1. (현행과 같음) 2. -----점자형 선거공보(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후보자가 제출하는 저장매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의----- --점자형 선거공보와 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 및----- -----
---	---

과 우편요금	-----
3. ~ 7. (생략)	3. ~ 7. (현행과 같음)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책자형 선거공보 1종을 작성할 수 있고,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책자형 선거공보 1종 외에 선거공보 1종을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의 두 배 이내에서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시각장애선거인이 아닌 장애선거인은 여전히 선거공보 등을 통해 후보자에 대한 정보 획득이 원활하지 않아 현행법의 개정을 통해 이러한 장애선거인의 참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음.³³⁾

이에, 주호영의원안은 후보자로 하여금 시각장애 이외의 장애가 있는 선거인을 위하여 음성, 점자 또는 수화로 제작된 선거공보나 선거공약 등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된 선거공보와 선거공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33) "'선거의 계절' 와도 장애인도 투표 못한다" 시사주간 2021. 4. 2.
<https://www.sisaweekly.com/news/articleView.html?idxno=34135>

시각장애선거인 이외의 장애선거인에게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보 등의 제공을 통해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시각장애선거인 이외의 장애선거인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음.

다만, 개정안의 심사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첫째, 개정안의 “이해하기 쉬운”이라는 표현의 의미가 다소 불명확하다는 점임.

선거공보나 선거공약서는 후보자 정보, 선거공약이나 이에 대한 추진계획 외에 국정철학, 후보자 본인에 대한 지지호소, 투표참여권유 등의 내용도 포함될 수 있어 이를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표현하더라도 장애선거인마다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개정안이 입법화될 경우 책자형 선거공보 및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선거공보 등의 제작에 더하여 이해하기 쉽게 설명된 선거공보 등의 제작으로 개정안에 따른 선거비용을 보전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므로 이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개정안의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총 99억 6,3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결과]

(단위: 백만원)

	2026 (지선)	2027 (대선)	2028 (국선)	2029	2030 (지선)	합계	연평균
장애가 있는 선거인을 위한 선거공보 작성(안 제121조제3항)	4,404	129	613	—	4,817	9,963	1.993

주: 1. 장애가 있는 선거인을 위한 선거공보 작성(안 제65조제4항)는 재량규정 재정수반요인으로서 일정 예산의 편성을 전제하고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2. 본 추계에서는 개정안에 따라 공직선거 후보자들이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선거공보 내용을 수어통역사가 전달하는 영상을 제작하고, 발달장애인을 고려하여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보(일반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보다 2배 많은 것으로 가정)를 작성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개정안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시각장애 이외의 장애를 가진 선거인에 대해서도 알 권리를 제고하는 취지에 공감하나, 청각장애인이 문맹률이 높다는 실증적 연구와 근거가 부족한 상황인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이 존재하는지 여부, 차별이 존재한다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수단인지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후보자 수가 많은 지방선거의 경우 국내 전문인력의 규모 등 현실적인 도입 가능성을 아울러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身體의 障礙로 인하여 자신이 記票할 수 없는 選舉人은 그 家族 또는 本人이 지명한 2人을 동반하여 投票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신체의 장애-----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이나 정신적 장애(「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제2호에 따른 정신적 장애를 말한다)로 인하여 혼자 기표소에 들어가서 기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선거인-----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말한다)-----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 ----- ----- ----- -----.
⑦ · ⑧ (생략)	⑦ · ⑧ (현행과 같음)	⑦ · ⑧ (현행과 같음)
	부 칙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모든 국민은 「대한민국헌법」³⁵⁾에 따라 선거권을 가짐. 이는 모든 국민은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의 원칙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공무원을 선출할 권리를 지닌다는 의미이며, 국가는 모든 국민의 선거권, 즉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를 적극적·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함.

이는 헌법 차원의 요청임과 동시에 현행법³⁶⁾ 및 「장애인차별금지

35) 「대한민국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³⁷⁾ 등 개별법률 차원에서 요구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기도 함.

그런데, 현행법은 시각장애나 신체장애를 지닌 선거인 등에 대해서만 투표보조인을 두도록 허용하고 있는 바, 정신적 장애나 발달장애를 지닌 선거인 등은 투표보조인을 둘 수 없어 참정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음.³⁸⁾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1인도 가능)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에게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고, 투표보조의 가능 여부는 투표장에서 장애 등록 여부, 청각·발달 등 장애유형과 무관하게 선거인 또는 동행인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상태’임을 설명하는

36)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①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또는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할인하는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한 실시방법 등을 정당·후보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3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참정권)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이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 전달,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보조원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에게 후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정도의 수준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38) 투표 보조, 발달장애인은 안 된다? [서초동M본부](MBC, 2024. 10. 16.)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6700_36438.html

경우 투표관리관이 이를 적극 고려하여 투표 보조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함.³⁹⁾

이와 관련하여 비록 1심 판결이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발달장애 선거인들이 제기한 2023가합52091 차별구제청구 등 사건에서 지방선거 및 대통령선거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투표보조가 허용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간접차별 및 정당한 편의제공거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적극적 구제조치로서 이 판결 확정일 이후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선거와 국민투표에서 발달장애선거인들에게 가족 또는 원고들이 지명하는 2명의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도록 판결한 바 있음(2024. 10. 10.).⁴⁰⁾

이에, **김예지의원안2**, **박주민의원안**은 신체적 장애 외에 정신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혼자 기표소에 들어가서 기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선거인도 기표소에 투표보조인을 동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라는 요인에 관계 없이 만 18세 이상의 선거인이라면 누구든지 투표할 수 있도록 보통선거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입법취지를 갖고 있다고 봄.

참고로, **김예지의원안2**은 그 대상을 시각 또는 신체 장애,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신적 장애로 규정하고, **박주민의**

39)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관리매뉴얼(투표보조 관련 내용 발췌)

40)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사건에 대해 2025년 1월 8일 항소하였다고 밝힘.

원안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각 호⁴¹⁾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장애(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적장애인 등)로 규정하여 관련 법률을 직접적으로 인용하여 장애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음.

다만, 정신적 장애는 그 특성상 상대적으로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보다 장애로 인해 혼자 기표소에 들어가서 기표하는 것이 곤란한지가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음.⁴²⁾

또한, 설사 외부에 드러나더라도 곤란함의 정도(현저한지 여부)는 선거인 개개인과 투표관리관 등 투표소 내의 인력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므로 일관성있고 공정한 선거사무의 진행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봄.

따라서, 개정안들의 입법화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선거인의 실질

41)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42) 현행법의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의 경우, 대법원이 해당 선거인을 시력상실 등 시각장애로 인하여 투표용지에 기표할 해당 후보자의 표시를 전형 분간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기표행위를 할 수 없거나 또는 손 등 신체의 장애로 말미암아 직접 자신의 신체를 이용하여 해당 후보자의 란에 기표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선거인으로 판시한 바 있고,(대법원 1999. 7. 13. 선고 99우48 판결)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한 ①손 떨림 등이 심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투표할 수 없는 자, ②시각 협응능력(눈의 시각정보와 손의 운동정보가 유기적으로 맞물려 작용하는 능력) 저하등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투표할 수 없는 자 등에 한정하여 투표보조인의 동행을 인정하고 있음.

적 참정권 보장’이라는 개정안의 취지 및 필요성과 함께 개정안의 내용에 대한 구체화 및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신적 장애인에게 투표 보조를 허용해 참정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혼자 기표소에 들어가서 기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에 대한 판단의 어려움, 대리투표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정희용의원안4]

9. 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대상에 장애 추가 등

정희용의원안4은 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대상에 현행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 외에 “장애”를 추가하고,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의 장애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는 기존 허위사실공표죄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정희용의원안4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① (생략) ⁴³⁾ ②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
을 공연히 비하·모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 (생
략)⁴⁴⁾

② 당선되지 못하게 할 目的으로
演說・放送・新聞・通信・雜誌・
壁報・宣傳文書 기타의 방법으로
候補者에게 불리하도록 候補者, 그
의 配偶者 또는 直系尊・卑屬이나
兄弟姉妹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公表하거나 公表하게 한 者와 허
위의 사실을 게재한 宣傳文書를
配布할 目的으로 소지한 者는 7年
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상 3
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단서 신설>

③・④ (생략)⁴⁵⁾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 ~
④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2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 10. (생략)

10의2. 제110조제2항을 위반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한 자

-----성별
이나 장애를-----
-----.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 (현행과
같음)

② -----

-----.

다만, 본문에 규정된 행위가 후보
자의 장애에 관한 허위의 사실인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1. ~ 10. (현행과 같음)

10의2. -----
-----성별이나
장애를-----

11. · 12. (생 략)	11. · 12. (현행과 같음)
-----------------	--------------------

현행법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등과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지 않도록 하면서(법 제110조제2항), 이를 위반하여 해당 사항을 공연히 비하·모욕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법 제256조제5항제10호의2).

또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법 제250조제2항).

43)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4)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5) ③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제1항(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경선후보자”로 본다.

④ 제82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딥페이크영상등에 표시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처럼 현행법이 후보자 등에 대한 비방과 허위사실 공표를 엄격히 처벌하는 이유는 후보자 등에 대한 과도한 인신공격을 방지하여 후보자 등의 명예를 보호하고, 선거인들에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능력, 자질 등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함임.⁴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철이 다가오면 후보자 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상대 후보의 개인적인 약점이나 장애 등을 부각하며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사실과 다른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해 유권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끊이지 않고 있음.⁴⁷⁾

특히, 후보자와 관련된 장애를 가지고 비방⁴⁸⁾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특정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넘어 장애를 가진 사람들 전체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로 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2차적 피해를 유발하며 사회적 통합을 저해할 수 있음.

46) “공직선거법 제251조 부분의 입법목적은 후보자 등에 대한 과도한 인신공격을 방지하여 후보자 등의 명예를 보호하고 나아가 선거인들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하여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 외에 후보자 등을 비방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후보자 등에 대한 중상모략과 인신공격, 흑색선전 행위를 억제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된다.”(2010헌바53) 위 헌법재판소 판례는 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와 관련된 내용이나, 후보자 비방을 금지하려는 입법 취지는 법 제110조제2항과 동일함.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은 선거인들에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능력, 자질 등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헌재 2009. 3. 26. 2007헌바72; 헌재 2009. 11. 26. 2008헌마114 참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위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므로 수단의 적합성 또한 인정된다.”(2019헌바509)

47) 연합뉴스(2024.10.11.), “재판 넘겨진 총선 당선자 14명...허위사실유포, 흑색선전이 최다”

중부일보(2024.4.1.), “22대 총선 D-8, 선거 중반 고발, 비방전...비난으로 얼룩진 총선”

48) 이데일리(2004.4.6.), “총선시민연대 낙선대상자 심사자료” 언론보도 중 발췌

“1997년 12월 대통령 선거관련 거리유세에서 당시 김대중 후보와 아들 김홍일의원이 다리를 저는 것을 흉내내며 비하 발언을 함. 이와 관련 후보자비방혐의로 선거법위반 벌금 80만원 선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지 말 것을 명시하고 있음.⁴⁹⁾

이에 정희용의원안⁴은 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대상에 현행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 외에 “장애”를 추가하고,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의 장애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는 기존 허위사실공표죄(7년, 500~3천만원 이하)보다 가중하여 처벌(10년, 5천만원 이하)하도록 하려는 것임.

다만, 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대상에 장애를 추가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해당 행위를 동법 제251조에서 후보자비방죄로 처벌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법 제110조·제256조 및 제251조 간 비교]

구분	제110조·제256조	제251조
목적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비방(비하·모욕) 대상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언히 비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언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49)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차별금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③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모욕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
형량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위법성의 조각	규정 없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는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범죄의 실태와 죄질 및 보호법익 그리고 범죄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국가의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임을 판시한 바 있음.

[헌법재판소 1995.4.20. 선고 91헌바11, 판례집 7-1, 478]

“ 어떤 행위를 범죄(犯罪)로 규정하고 이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범죄(犯罪)의 실태와 죄질(罪質) 및 보호법익(保護法益) 그리고 범죄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국가의 입법정책(立法政策)에 관한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立法裁量) 내지 형성(形成)의 자유(自由)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다. 따라서 어느 범죄(犯罪)에 대한 법정형(法定形)이 그 죄질(罪質)의 경중(輕重)과 이에 대한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전체 형벌체계상 현저히 균형을 잃게 되고 이로 인하여 다른 범죄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헌법상 평등(平等)의 원리에 반하게 된다거나, 그러한 유형의 범죄(犯罪)에 대한 형벌(刑罰) 본래의 기능과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함으로써 헌법 제37조 제2항으로부터 파생되는 비례(比例)의 원칙(原則) 혹은 과잉금지(過剩禁止)의 원칙(原則)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등 입법재량권(立法裁量權)이 헌법규정이나 헌법상의 제원리에 반하여 자의적으로 행사된 경우가 아닌 한, 법정형(法定形)의 높고 낮음은 단순한 입법정책(立法政策) 당부의 문제에 불과하고 헌법위반의 문제는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대상에 장애를 추가하고, 장애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가중처벌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할 필요성과 특정 내용(장애)에 대해서만 가중처벌하는 것이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우려는 없는지 종합적으로 논의하여 현재 우리의 정치문화 및 국민 일반의 가치관 등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개정안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할 것인지 또는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시대적 상황, 사회구성원들의 의식 등을 고려하여 국가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임.

10. 장애 관련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이의제기 시 처리기한 신설

정희용의원안4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예비)후보자의 장애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이 공표되었음을 이유로 이의제기가 있는 때에는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가 3일 이내에 조치를 하도록 처리기한을 신설하려는 것임.

현 행	정희용의원안4
제110조의2(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① ~ ③ (생략) ⁵⁰⁾ <u><신 설></u>	제110조의2(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해당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장</u>

④ (생략) ⁵¹⁾	<u>애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이 공표되었음을 이유로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때에는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제기가 있는 날부터 3일 이내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u>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	---

현행법은 누구든지 (예비)후보자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 등에 관하여 공표된 사실이 거짓임을 이유로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⁵²⁾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법 제110조의2제1항), 해당 이의제기를 받은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자료의 제출이 없거나 제출한 자료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공표된 사실이 거짓으로 판명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공고하도록 하고 있음(동조 제3항).

50) 제110조의2(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① 누구든지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공표된 사실이 거짓임을 이유로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 소속정당, 이의제기자, 관련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단체에 대하여 증명서류 및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증명서류 및 관련자료의 제출이 없거나 제출한 증명서류 및 관련자료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공표된 사실이 거짓으로 판명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제기서와 제출받은 서류·자료를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편집·수정 없이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51) ④ 이의제기서의 양식, 제출 서류·자료의 공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52)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가령 서울시장선거의 경우 서울시선관위가 해당 선거구선관위이고, 중앙선관위가 직근 상급선관위에 해당하며, 서울시 종로구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서울시종로구선관위가 해당 선거구선관위이고, 서울시선관위가 직근 상급선관위에 해당함.

그런데, 현행법은 이의제기에 대한 확인 및 공고에 대하여 결과의 공고만 지체없이 하도록 규정할 뿐 구체적인 처리기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의제기 과정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음.⁵³⁾

이에 **정희용의원안**⁴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예비)후보자의 장애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이 공표되었음을 이유로 이의제기가 있는 때에는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가 3일 이내에 조치를 하도록 처리기한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신속한 이의제기 처리를 통해 허위정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허위정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처리기한을 신설하는 것을 “장애”와 관련된 허위사실로 국한해야 하는지는 형평성 차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또한, 처리기한을 3일 이내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실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의견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처리기한에 있어 이의제기대상자 및 관계기관 등의 증명·소명자료 제출, 이의사실 검토 등의 절차를 고려할 때 3일 이내 조치는 물리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입장임.

53) 머니투데이(2020.4.14.), 언론보도(<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41308587666691>) 중 “상대 후보의 재산 허위신고 사실을 지난 7일 전주시 덕진구 선관위에 이의제기했지만, 허위사실 공표 결정 공고가 나온 것은 11일 오후였으며 전북 선관위의 늦장 조치로 4일의 시간을 허비했다고 밝혔다.”

[최근 공직선거 이의제기 처리기간 현황]

(단위: %, 기간별 처리건수/이의제기건수)

선거명 처리기간	제22대 국선	제8회 지선
5일 미만	50.0	44.4
5 ~ 9일	29.6	40.0
10 ~ 14일	4.5	13.3
15 ~ 19일	6.8	2.2
20일~25일	9.1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최보윤의원안]

11.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 위촉 대상에 장애인 단체 추가

최보윤의원안은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위촉 대상에 장애인단체를 포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최보윤의원안
제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 ① (생략)	제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제2호 후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정수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② ----- ----- ----- ----- ----- -----.
1. 1의2. (생략)	1. 1의2. (현행과 같음)
2.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2. ----- -----

위원장 및 정당추천위원을 포함한 위원 3명(정당추천위원의 수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위원들 모두 포함한 수를 말한다), <u>학계·법조계</u> <u>· 시민단체· 전문언론인</u> 중에서 해 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위 촉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9명 이내 의 위원. 이 경우 구·시·군선거 관리위원회 위원을 겸하는 위원의 임기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제8 조에 따른 재임기간으로 한다.	----- ----- ----- ----- <u>학계·법조계</u> ----- <u>· 시민단체· 장애인단체· 전문언론인</u> ----- ----- ----- ----- -----
--	--

「공직선거법」 제8조의7은 후보자의 대담·토론회와 정당의 정책토
론회를 공정하게 주관·진행하기 위하여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시·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과 위촉단체
등을 명시하고 있음.

[선거방송토론회의 종류 및 직무]

구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대상	대통령, 비례대표 국회의원	시·도지사, 비례대표 시·도의원	지역구 국회의원, 자치구·시·군의 장
위촉 단체	방송통신심의위원회·학계· 법조계·시민단체	좌 동	<u>학계·법조계·시민단체·</u> <u>전문언론인</u>

이에 따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공영방송사, 지상파방송사가 포함된 단체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

회규칙으로 정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각 1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학계·법조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정당, 공영방송사, 지상파방송사가 추천하는 각 1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학계·법조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정당추천위원을 포함한 3명과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전문언론인 중에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됨.

한편, 2023년 12월 말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2조⁵⁴⁾의 기준에 해당되는 장애인 중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한 자는 약 263만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5.1%⁵⁵⁾에 해당되나,

선거방송과 관련된 토론회 등의 장소 결정, 사회자·주제 선정, 진행 방식 결정, 질문사항 선정 등의 사무에서 장애인들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개진할 수 있는 창구는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54)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55) e-나라지표 중 장애인 현황(2025.2.검색)

이에 **최보윤의원안**은 이 중 구·시·군선거방송토론회에 한하여 위원 위촉 시 장애인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의 대담·토론회 등의 사무에 있어 정치·경제·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입장을 고려하는 등 장애인의 참정권을 폭넓게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취지를 갖고 있다고 보임.

다만,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의 위촉대상 단체와 중앙 및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의 위촉대상 단체 간에 차이를 둔 것이 비록 선거구 규모의 차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운영 필요성, 위원 구성의 효율성 등을 고려한 것⁵⁶⁾이라고 할지라도,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다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개정안과 같이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만 장애인 단체를 위촉대상 단체로 추가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중앙 및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위촉 대상에 장애인 단체를 포함하게 할 것인지 여부는 대담·토론회의 원활한 주관·진행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위원 위촉이 필요한 점과 장애인 유권자의 정치적 권리 확대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임.

5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2025.3.7.)

12. 발달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선거공보 작성 등 선거정보 제공

최보윤의원안은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를 책자형 선거공보에 게재하는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발달장애선거인의 실질적 참정권 보장을 위해 별도의 예비후보자공약집, 후보자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 등을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최보윤의원안
제65조(선거공보) ① ~ ③ (생략)	제65조(선거공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후보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거공보 외에 시각장애선거인(선거인으로서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시각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위한 선거공보(이하 “점자형 선거공보”라 한다) 1종을 제2항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의 두 배 이내에서 <u>작성할 수 있다.</u> 다만,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되,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④ ----- ----- ----- ----- ----- ----- ----- ----- <u>-----책자형 선거공보에 게재하는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할 수 있다.</u> ----- ----- ----- ----- ----- ----- ----- -----.
⑤ ~ ⑭ (생략)	⑤ ~ ⑭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6조의2(발달장애인을 위한 선거정보 제공) ①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예비후보자가 제60조의4에 따라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발간하여 판매·제출하는 때에는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선거인을 위한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별도로 작성하여 판매·제출할 수 있다.

② 후보자(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가 제65조에 따라 선거공보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때에는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의 2배 이내에서 발달장애인인 선거인을 위한 선거공보를 별도로 작성하여 같이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65조에 따른 선거공보를 발송하는 때에 이를 함께 발송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가 제66조에 따라 선거공약서를 작성하여 배부·제출하는 때에는 선거공약서의

	면수의 2배 이내에서 발달장애인인 선거인을 위한 선거공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같이 배부·제출할 수 있다.
--	--

가. 점자형 선거공보 내용을 책자형 선거공보와 동일하게 작성

현행법은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는 내용에 제한 없이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⁵⁷⁾의 두 배 이내에서 작성할 수 있도록 재량적으로 규정하면서,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는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제출을 의무화하는 한편,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 표시로 점자형 선거공보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점자는 자음과 모음을 각각 독립된 글자로 표시해야 하는 특성상 일반 문자보다 분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으므로, 내용에 제한을 두지 않고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의 2배 이내로만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보윤의원안은 선거공보의 면수는 현행과 동일하게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의 2배 이내로 유지하면서, 그 내용은 책자형 선거공보와 동일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시각장애선거인의 선거정보 접근성 및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취지를 갖고 있다고 보여짐.

57) 대통령선거는 16면 이내,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는 12면 이내, 지방의회의원선거는 8면 이내로 작성됨.

다만, 개정안은 점자형 선거공보를 책자형 선거공보와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재량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후보자가 선택적으로 점자형 선거공보에 책자형 선거공보와 동일한 내용을 작성할 수도 있고, 이와 다르게 장애인 복지정책 등 특정 주제의 비중을 더 늘려 책자형 선거공보와 다르게 작성할 수도 있어, 결과적으로 현행 규정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개정 실익은 그리 크지 않다고 봄.

참고로, 점자형 선거공보의 내용과 관련된 규정의 연혁을 보면, 과거에는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과 동일하게 또는 줄이는 방식으로 작성하도록 하였으나, 점자형 선거공보에 장애인 정책 등을 충분히 게재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선거공보의 내용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하여 현행 규정과 같은 방식으로 규율되게 된 것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과거 점자형 선거공보와 관련된 규정 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국회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임.

[점자형 선거공보 규정 개정 연혁]

개정 일시	내용
2005. 8. 4.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과 동일하거나 줄이는 방식으로 내용제한
2010. 1. 25.	내용제한 없이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에서 작성하는 방식으로 면수제한
2015. 8. 13.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의무적으로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하도록 하되,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으로 출력되는 전자적 표시를 하는 것으로 같음
2018. 4. 6.	음성으로 출력되는 전자적 표시를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 표시로 개정
2020. 12. 29.	점자형 선거공보 면수가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 이내에서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의 두 배 이내로 개정

나. 발달장애선거인을 위한 예비후보자공약집, 후보자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등 작성

현행법⁵⁸⁾에 따르면 후보자는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면서,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는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제출을 의무화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한편,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별도의 예비후보자공약집 및 선거공약서의 작성·제출은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점자형 선거공약서에 한하여 후보자가 이를 작성하는 경우 그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⁵⁹⁾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시각장애선거인과 다르게 발달장애선거인을 위하여는 별도로 후보자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고 있어 발달장애선거인의 후보자에 대한 선거정보 획득이 원활하지 않아

58) 「공직선거법」

제65조(선거공보) ④ 후보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거공보 외에 시각장애선거인(선거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시각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위한 선거공보(이하 “점자형 선거공보”라 한다) 1종을 제2항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의 두 배 이내에서 작성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되,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59)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보자를 위하여 부담한다. 이 경우 제3호의2 및 제5호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2. 제65조에 따른 점자형 선거공보(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후보자가 제출하는 저장매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작성비용과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 및 같은 조 제9항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포함한다) 및 전단형 선거공보의 발송비용과 우편요금

3. 제66조(선거공약서)제8항의 규정에 따른 점자형 선거공약서의 작성비용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⁶⁰⁾

이에 **최보윤의원안**은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로 하여금 발달장애선거인을 위한 별도의 예비후보자공약집, 후보자 선거공보·선거공약서 등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 발달장애선거인의 알 권리와 실질적 참정권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권익옹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 역시 이러한 지원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⁶¹⁾

다만,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은 발달장애선거인을 위한 별도의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등의 작성과 관련하여 재정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부담 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둘째, 현행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는 표시된 글자를 「한국점자 표기의 기본원칙」에 따라 일률적으로 작성하면 되는 데 반해, 발달장애인⁶²⁾을 위한 선거공보의 작성방법에 관하여는 현재까

60) 경향신문(2024.3.12.), “공약집도, 용지도 어렵지만 투표할게요.. 생애 첫 투표 앞둔 발달장애인

6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장애로 인하여 차별을 받는 등 권리가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권익옹호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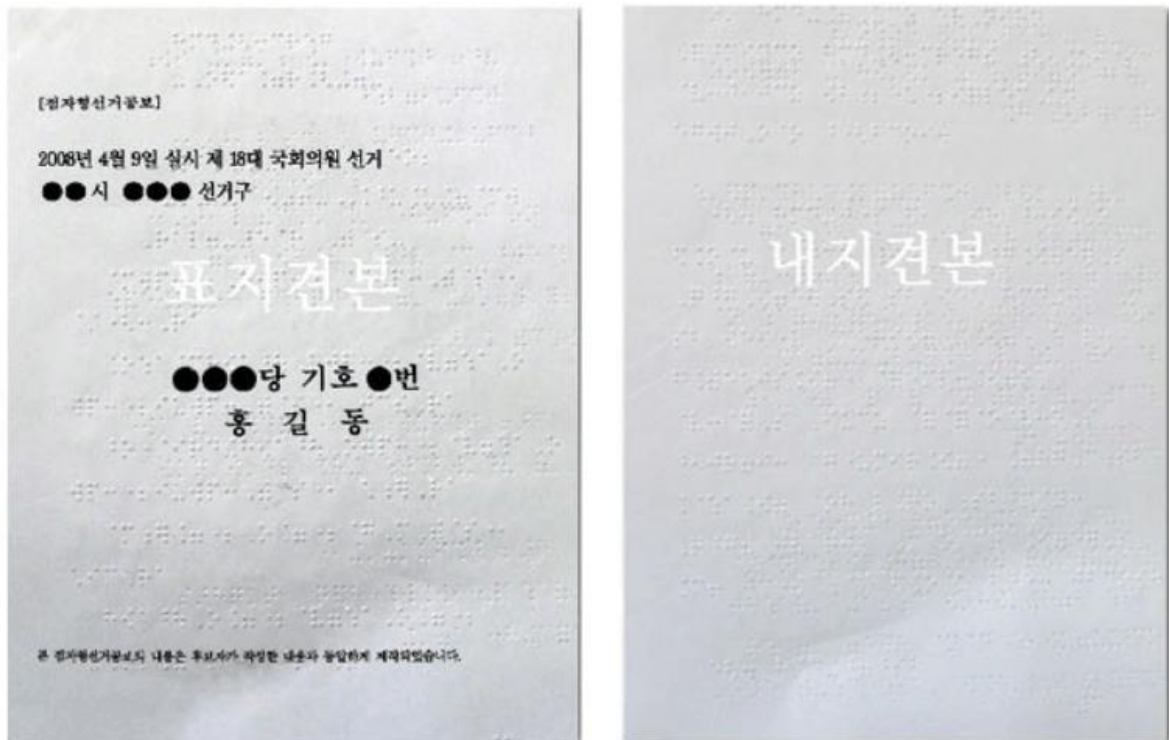
6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장애인을 말한다.

지 명확한 작성지침 등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시점에서 실행 가능성 측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점자형 선거공보 예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발달장애 선거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하나, 국내의 경우 발달장애인을 위한 자료 제작과 관련한 연구가 매우 부족하고, 관련 연구기관이나 자료를 작성할 수 있는 업체 현황 파악도 어려운 점, 발달장애인 선거공보 등 작

-
- 가. 지적장애인: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 나. 자폐성장애인: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다.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성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할 경우 새로운 재정부담이 발생하게 되고, (예비)후보자가 부담하게 할 경우 후보자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기회 불균등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13. 청각장애인의 참정권 보장(한국수어·자막 제공 의무화 등)

최보윤의원안은 후보자의 방송광고 등에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한국수어 또는 자막 방영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변경하고, 해당 의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 방송의 경우 의무적으로 한국수어통역사를 2명 이상 배치하여 토론 참가자 별로 전담 수어통역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현행	최보윤의원안
第70條(放送廣告) ① ~ ⑤ (생략)	第70條(放送廣告)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候補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放送廣告에 있어서 聽覺障礙選舉人을 위한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다.	⑥ ----- ----- ----- ----- -----방영하여야 한다.
⑦ · ⑧ (생략)	⑦ · ⑧ (현행과 같음)
第72條(放送施設主管 候補者演說의	第72條(放送施設主管 候補者演說의

放送) ① (생 략)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候補者 演說의 放送에 있어서는 聽覺障礙選舉人을 위하여 한국수어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다. ③ · ④ (생 략)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① ~ ⑪ (생 략) <신 설> ⑫ (생 략) 第81條(團體의 候補者등 초청 對談·討論會) ① ~ ⑦ (생 략) ⑧ 第71條(候補者 등의 放送演說) 第12項의 規定은 候補者 등 초청 對談·討論會에 이를 準用한다. ⑨ (생 략)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① ~ ⑪ (생 략) ⑫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자막방송 또는 한국수어통역을 하여야 한다.	放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방영하여야 한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① ~ ⑪ (현행과 같음) ⑫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관하여는 제72조제2항을 준용한다. ⑬ (현행 제12항과 같음) 第81條(團體의 候補者등 초청 對談·討論會)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제71조제12항 및 제72조제2항은 ----- -----. ⑨ (현행과 같음)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① ~ ⑪ (현행과 같음) ⑫ ----- ----- ----- -----하여야 하며, 한국수어통역의 경우 한국수어통역사를 2명 이상 배치하여 대담·토론을 실시하는 사람별로 전담하여 한국수어통역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

⑬ · ⑭ (생략)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 ③ (생략) ④ <u>제147조제3항(제148조제4항 및 제173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u> ⑤ ~ ⑫ (생략)	⑬ · ⑭ (현행과 같음)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u> 1. <u>제70조제6항(제71조제3항 및 제137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72조제2항(제73조제4항·제74조제2항·제79조제12항·제81조제8항 및 제8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한국수어 또는 자막을 방영하지 아니한 자</u> 2. <u>제147조제3항(제148조제4항 및 제173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u> ⑤ ~ ⑫ (현행과 같음)
---	--

현행법은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제70조),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제72조),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제79조) 및 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제81조) 등에서 한국수어 또는 자막 제공 규정을 두고 있지 않거나,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어 청각장애선거인이 후보자들의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⁶³⁾

63) 지방선거기간 동안 후보들의 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그 정보들이 수어로 통역되는 비율은 5%에 불과하다는 언론보도가 있음. (자료출처: 아시아타임즈(2022.5.30.), “선거 사각지대① 유권자

또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서는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자막방송 또는 한국수어통역을 의무적으로 실시(제82조의2)하고 있지만, 대담·토론을 실시하는 사람별로 한국수어통역사가 배치되지 않아 토론 내용을 알아듣기 어렵거나 후보자의 발언을 구분하여 이해하기 어려워 청각장애선거인의 실질적인 참정권 보장이 미흡하다는 지적 또한 제기되고 있음.⁶⁴⁾

이에 **최보윤의원안**은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 등 모든 영역에서 한국수어 또는 자막 제공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후보자의 대담·토론회에 한국수어통역사를 2명 이상 배치하여 대담·토론을 실시하는 사람별로 전담하게 하려는 것으로 청각장애선거인의 알 권리와 실질적 참정권 보장에 기여하고, 「한국수화언어법」의 이념에 따라 한국수어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⁶⁵⁾

지만 소외받는 청각장애인(농인)”)

64) 미디어오늘(2021.4.14.), “토론 후보자 2명인데 수어통역사 1명이면 안 헛갈리겠나”

65) 「**한국수화언어법**」 제2조(기본이념) ①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는 대한민국 농인의 공용어이다.

② 국가와 국민은 한국수어를 사용하는 농인이 농정체성을 확립하고 한국수어와 농문화를 계승·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③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등”이라 한다)는 한국수어 사용을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생활영역(이하 “모든 생활영역”이라 한다)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모든 생활영역에서 한국수어를 통하여 삶을 영위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④ 농인등은 한국수어로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수어·자막 관련 규정]

구분		현행	개정안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	§70⑥	수어 또는 자막 방영 <u>재량</u> 규정	수어 또는 자막 방영 <u>의무</u> 화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 방송	§72②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70⑥ 준용)	§71③		
정당·정책의 방송연설 (§70⑥ 준용)	§137의2⑥		
경력방송(후보자 사진·성명·주요 경력 등 알립) (§72② 준용)	§73④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72② 준용)	§74②		
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72② 준용)	§82④		
후보자의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	§79	규정없음	준용규정 (수어 또는 자막 방영 <u>의무</u>)
단체에서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81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합동방송연설회 포함)	§82의2⑫	수어 또는 자막 방영 <u>의무</u>	현행 + 수어통역의 경우 수어통역사를 2명 이상 배치 의무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 (§82의2⑫ 준용)	§82의3②	준용규정 (수어 또는 자막 방영 <u>의무</u>)	현행과 같음
정당의 정책토론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비선거기간) (§82의2⑫ 준용)	정당법 §39③		

다만,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비용부담” 측면에서 한국수어 또는 자막을 의무화하는 경우 방송광고, 방송연설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후보자, 방송시설 등의 부담⁶⁶⁾ 우려가 클 것으로 보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①후보자 토론회에서 한국수어통역방송을 실시한 경우 수어통역사에게 30분당 15만원의 사례금을 지급한 바 있으며, ②자막방송의 경우 「선거방송토론사무편람(2024)」에 따라 제작단가가 분당 약 2천원 내외로 산정됨.

이와 관련해 한국방송협회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임의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은 방송사업자의 보도·편성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방송사의 기술적·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청각장애선거인의 참정권 보호를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⁶⁷⁾ 등을 감안하여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입장임.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후보자 선거방송에서 수어 또는 자막 방영을

66) 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를 위하여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되었으나, 2025.2.7.기준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황임.

67) 청각장애인 시청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의무를 지우기보다 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수어방송 또는 AI기반 아바타 수어방송에 대한 정부 투자와 지원을 확대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실효적이라는 것이 한국방송협회 의견임.

임의규정으로 정한 현행법 규정이 청각장애인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이유로 낸 헌법소원에서 “수어·자막방송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할 경우 선거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될 수 있고, 방송사업자의 보도·편성의 자유와 후보자·정당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할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합헌이라고 판시한 바 있음.⁶⁸⁾

둘째, 짧은 선거운동기간 동안 전문수어통역사의 원활한 인력수급이 가능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23년 12월 31일 기준, 공식적으로 한국수어통역 자격증 취득자는 2,014명으로 집계⁶⁹⁾되지만, 이들이 모두 실제 수어통역 활동을 하고 있는지 여부는 확인이 불가하여, 한국수어통역사의 구체적인 인력수급 계획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셋째, “불이익처분” 측면에서 개정안은 한국수어 또는 자막 방영 의무 위반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일괄적으로 부과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적절성과 해당 금액의 적정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현재도 한국수어 또는 자막 방영을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선

68) 다만, 재판관 이선애, 이석태, 김기영의 반대이견으로서 ① 한국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여 국어를 읽고 이해하기 어려운 청각장애인은 청각적 방법으로 선거정보를 취득하기 어려우므로 보편적 매체인 텔레비전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선거방송에서는 한국수어·자막을 제공할 필요성이 크고, ② 장애인 방송고시상 장애인방송 편성비율 준수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방송사업자들은 한국수어·자막방송을 할 수 있는 인력, 설비나 기술수준을 이미 확보하고 있으므로,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거나 보도·편성의 자유 및 선거운동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게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과도한 조치는 아니라는 의견도 있었음.

6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2025.2.)

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⁷⁰⁾ 및 정책토론회⁷¹⁾에서도 해당 의무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후보자 및 방송사가 선거운동기간 동안 전문수어통역사 인력 수급의 문제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수어 또는 자막 방영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률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액수를 정하는 것은 그 정도가 헌법상 원칙에 반하여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이지 않다면 입법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판시하였음.⁷²⁾

참고로, 현행법상 과태료(제261조)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부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부과되고 있는데, 과태료 구간별 의무위반사항은 다음과 같음.⁷³⁾

70)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⑫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자막방송 또는 한국수어통역을 하여야 한다.

71) 「공직선거법」

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

②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제7항 내지 제9항·제10항 본문·제12항 및 제13항의 규정은 정책토론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담·토론회”는 “정책토론회”로,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 본다.

72) [헌법재판소 1998.5.28. 선고 96헌바83]

“입법권자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행정질서별인 과태료를 과하기로 하였다면, 다시 그 과태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도 역시 그것이 의무위반행위와 그에 대한 책임이 현저하게 균형을 잃게 되고 이로 인하여 다른 행정법규 위반자와의 사이에서 헌법상의 평등의 원리에 위반하게 된다거나 그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함으로써 헌법 제37조 제2항으로부터 파생되는 비례의 원칙 혹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등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입법재량을 현저히 불합리하게 또는 자의적으로 행한 것이라 단정할 정도로 높지 않은 한 입법재량에 속하는 문제라 할 것이다.”

73) 한국수어 또는 자막 방영을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조항(제82조의2제12항, 제82조의3제2항) 위반에 대해서는 벌칙 또는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이는 해당 의무의 주체가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기 때문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현행법상 과태료 구간별 의무위반사항(법 제261조)]

구분		의무위반사항(예시)
제1항	5천만원 이하	· 재산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선거인 등을 매수하거나 이해유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금품등을 요구한 경우
제2항	3천만원 이하	· 시정명령·정정보도문의 게재명령을 통보받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지 아니한 경우
제3항	1천만원 이하	· 고용주가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여 주지 않은 경우 ·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4항	5백만원 이하	·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소의 설치 관련 협조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제6항	3백만원 이하	· 방송광고, 방송연설 등과 관련된 규정을 위반한 경우 · 현행범인 또는 준형행범인으로서 동행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제7항	2백만원 이하	· 선거에 관해 현행법이 규정하는 신고, 제출 의무를 해태한 경우 · 투표용지모형을 훼손, 오손한 경우
제8항	1백만원 이하	· 참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 여론조사 기관 변경등록 신청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정안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청각장애인의 선거정보 접근권을 확대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수어 또는 자막 방영 의무화 여부는 전문수어통역사 인력 현황, 정당·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 방송사업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임.

대답, 토론회에서는 한국수어 또는 자막방영을 100% 실시하고 있음.(미실시 없음)

14. 교통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성 보장

최보운의원안은 현재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통약자를 위한 투표소 설치장소의 범위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최보운의원안
第147條(投票所의 設置) ① (생략)	第147條(投票所의 設置) ① (현행과 같음)
② 투표소는 투표구안의 학교, 읍·면·동사무소 등 관공서,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주민회관 기타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한다. 다만, 당해 투표구안에 투표소를 설치할 적당한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다른 투표구안에 설치할 수 있다.	② ----- ----- ----- -----고령자·장애인 및 임산부 등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승강기 및 경사로 등의 편의시설이 있고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 -----.
③ ~ ⑪ (생략)	③ ~ ⑪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투표소는 투표구안의 학교, 읍·면·동사무소 등 관공서,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등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법 제147조제2항), 투표소의 설비,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와 격리자등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제반 시설의 설치, 적절한 투표소 위치 확보 등의 조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위임하고 있음(법 제147조제11항).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은 투표소는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하여 1층 또는 승강기 등의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원활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규칙 제67조의2).

[투표소 설치 관련 현행 법령 체계]

「공직선거법」

제147조(투표소의 설치) ②투표소는 투표구안의 학교, 읍·면·동사무소 등 관공서,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주민회관 기타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한다. 다만, 당해 투표구안에 투표소를 설치할 적당한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다른 투표구안에 설치할 수 있다.

⑪ 투표소의 설비,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제반 시설의 설치, 적절한 투표소 위치 확보 등의 조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67조의2(투표소의 설치 및 설비) ① 투표소는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이동약자(이하 이 조에서 “이동약자”라 한다)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하여 1층 또는 승강기 등의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원활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 - 투표소 설치장소 선정기준

- 투표구안의 생활 중심지로 선거인이 잘 알고 있고 교통이 편리한 곳
- 투표하기 편리하고 투표관리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적정면적 규모의 장소
- 장애인 등의 투표편의 시설이 있는 다음의 장소
 - 투표소는 1층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층 투표소가 없는 경우에는 승강기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있는 곳
 - 장애인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임시경사로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곳

지난 22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투표소의 설치 층수별 현황을 보면 설치장소가 1층이 아닌 지하나 지상 2층 이상에 설치된 투표소는 2,915곳(20.4%)이었으며, 이 중 5.9%인 170곳은 승강기등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이나 고령자 및 임산부가 제3자의 도움 없이는 투표하기 어려운 여건이었음.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소의 설치 층수별 현황]

(단위: 개, %)

총 투표소수	지하	1층	2층	3층이상	승강기등 편의시설 설치된 투표수 (1층 제외)
14,259	425 (3.0%)	11,344 (79.6%)	1,501 (10.5%)	989 (6.9%)	2,745 (94.1%)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제22대 국회의원선거 총람)

이에 **최보윤의원안**은 투표소를 설치함에 있어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투표소를 승강기 및 경사로 등의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교통약자의 선거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으로 보임.

다만, 법률로 투표소를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승강기 및 경사로 등의 편의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정할 경우 모든 지역에서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투표소를 확보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이와 같은 현실적 문제점을 고려하여 「공직선거관리규칙」에는 투표소를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적절한 장소가 없는 경우 예외로 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교통약자의 투표 편의를 제고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동의하나, 투표구마다 지리적·환경적 여건이 다양

15. 병원 및 장애인 거주시설 등의 기표소에 참관 의무화

현행	최보윤의원안
제149조(기관·시설 안의 기표소) ① ~ ⑤ (생략) ⑥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 소장은 선거권자 중에서 1명을 선 정하여 기관·시설의 장이 설치· 운영하는 기표소의 투표상황을 참 관하게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49조(기관·시설 안의 기표소)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 ----- ----- 다만, 본문에 따 른 참관인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

⑦ 기관·시설의 장은 기표소를 설치하는 장소에 기표소·참관좌석,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설비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u>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회 직원 중에서 1명을 지정하거나, 그 기표소의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선거권자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1명을 선정하여 기표소의 투표 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u> ⑦ ----- ----- ----- -----, 이 경우 기표소는 그 안을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도록 설비하여야 한다.
---	--

현행법은 병원, 장애인 거주시설 등 기관의 장은 시설 내 기표소를 설치해야 하며, 후보자 등은 선거권자 중 1명을 선정하여 상기 기관·시설에 설치·운영되는 기표소의 투표상황을 참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방역·시설의 특수성 및 참관인부족 등으로 총 860개의 기관·시설 기표소 중 822개소에서만 참관이 이루어져⁷⁴⁾ 기관·시설 내의 거소투표 관련 부정 또는 부실 의혹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74)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총람(p.192~193)

이에 **최보윤의원안**은 병원, 장애인 거주시설 등에 설치하는 기표소에 참관인이 없는 경우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회 직원 또는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선거권자 1명을 선정하여 참관을 의무화하는 한편,

기표소는 그 안을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도록 하여 거소투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고 선거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여짐.

다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한정된 인력구조(위원회당 평균 6명~9명)를 감안할 때, 선거사무가 집중되는 기간에 위원회 직원으로 하여금 참관을 전담하게 하는 것이 선거사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한 것인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봄.

이와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인력구조를 고려할 때 선거기간 중 집중되는 법정사무를 처리하는 위원회 전임직원의 참관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기관·시설의 장’이 일반 선거권자를 참관인을 선정하는 것도 현실적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해당 기관·시설의 직원 중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을 입회인으로 선정하여 기표소의 투표상황을 참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한편, 기관·시설 안의 기표소는 그 안을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은 현행 147조제6항⁷⁵⁾의 입법례를 참고한 것으로 비밀투표의 원칙을 강화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라고 판단됨.

16. 발달장애선거인 등을 위한 그림투표용지 등 제작·사용

최보윤의원안은 발달장애선거인을 위하여 그림투표용지를 제작·사용하거나 투표용지에 소속정당 마크나 심벌 표시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최보윤의원안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① ~ ⑦ (생략) ⑧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는 <u>視覺障礙로</u> 인하여 자신이 記票를 할 수 없는 選舉人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特殊投票用紙 또는 投票補助用具를 제작·사용할 수 있다. <u><신설></u>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 <u>장애로</u> ----- ----- ----- ----- ----- ⑨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u>발달장애인인 선거인을 위하여 중앙</u>

75) 「공직선거법」

제147조(투표소의 설치)

⑥ 기표소는 그 안을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도록 설비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지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⑨ (생 략)	<u>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용지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나타낸 그림투표용지를 제작·사용하거나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소속정당을 나타내는 마크나 심벌 표시 등을 기재하여 사용할 수 있다.</u> ⑩ (현행 제9항과 같음)
---------	---

현행법은 시각장애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 한정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를 제작·사용할 수 있으며, 「공직선거관리규칙」은 투표용지를 점자로 작성하거나 점자형 투표보조용구와 같은 도구를 제작하여 시각장애선거인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⁷⁶⁾

그런데, 이러한 시각장애선거인 등을 위한 배려와는 달리 발달장애 선거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알아보기 쉬운 선거공보물과 그림 투표용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음.⁷⁷⁾

76) 「공직선거관리규칙」

제74조(시각장애선거인용 특수투표용지등) ①구·시·군위원회가 법 제151조제8항에 따라 시각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이하 이 조에서 "시각장애선거인"이라 한다)을 위한 특수투표용지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71조(투표용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용지 서식에 의하되, 점자로 작성한다. 이 경우 후보자의 성명은 법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순위등)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글점자로 표시한다.

②구·시·군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투표용지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보조용구를 작성하여 사전투표관리관 또는 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에서 시각장애선거인에게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보조용구는 시각장애선거인이 투표용지의 기표란에 표를 하기 쉽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77) “그림 투표용지 만들어달라!”… 발달장애인 1054명, 탄원서 제출, 비마이너, 2024. 10. 29.

이에, **최보윤의원안**은 시각장애선거인 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선거인을 위하여 「공직선거관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용지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나타낸 그림투표용지를 제작·사용하거나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소속정당을 나타내는 마크나 심벌표시 등을 기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발달장애선거인의 참정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권익옹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러한 지원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을 것임.

또한, 개정안을 통해 발달장애선거인뿐만 아니라 후보자와 그 소속정당을 쉽게 식별하지 못하는 등 투표용지 해석에 곤란을 겪는 선거인, 글을 읽거나 쓸 줄 모르는 선거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그림투표용지 도입으로 기존 문자형 투표용지와 이원화됨에 따라 개표 및 관리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인지도가 높은 후보자가 유리할 수 있어 후보자 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및 별도의 투표용지 제작으로 인한 행정적 부담과 추가 예산 소요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발달장애선거인을 위해 그림투표용지를 제작·사용하거나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소속정당을 나타내는 마크 등을 기재하여 사용할지 여부는 발달장애선거인 등의 원활한 투표를 지원하는 효과, 소요 비용, 현재 제공 중인 특수투표용지, 투표보조용구의 효과 및 사진 삽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그림투표용지 등의 적용 구분 비교]

구분	특수투표용지	투표보조기구	그림투표용지	소속정당 표시
장애로 인해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	○	○	×	×
발달장애선거인	×	×	○	○

참고로, 외국 사례를 보면 투표용지에 후보자 사진을 포함시키는 국가로 아일랜드가 있으며 정당로고를 포함시키는 국가로 영국, 미국, 프랑스, 포르투갈, 리투아니아 등이 있음.

[후보자 사진, 정당로고가 포함된 외국투표용지] [후보자 사진, 정당로고 투표용지 포함여부 해외사례]

유형	국가명
후보자 사진	아일랜드
정당로고	영국, 미국, 프랑스, 스페인, 칠레,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리투아니아, 멕시코,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튀르키예

17. 정신적 장애 등이 있는 선거인도 투표보조인 동반 허용

최보윤의원안은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 외에 정신적 장애 또는 고령으로 혼자 기표소에 들어가서 기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선거인도 투표보조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 외에 공적 보조원을 투표보조인의 범위에 포함하려는 것임.

현행	최보윤의원안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① ~ ⑤ (생략) ⑥ 選舉人은 投票所의 秩序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초등학교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초등학교인 어린이의 경우에는 기표소를 제외한다)안에 출입할 수 있으며, 視覺 또는 身體의 障礙로 인하여 <u>자신이 記票할 수 없는 選舉人은 그 家族 또는 本人이 지명한 2人을 동반하여 投票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u>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 ----- ----- -- <u>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이나 발달장애 등 정신적 장애 또는 고령으로 인하여 혼자 기표소에 들어가서 기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선거인은 그 가족, 본인이 지명한 2인 또는 공적 보조원</u> ----- -----.

모든 국민은 「대한민국헌법」 제24조에 따라 선거권을 가지고 있음.
이는 모든 국민은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의 원칙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공무원을 선출할 권리를 지닌다는 의미이며, 국가는 모든 국민의 선거권, 즉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를 적극적·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함.

이는 헌법 차원의 요청임과 동시에 현행법⁷⁸⁾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⁷⁹⁾ 등 개별법률 차원에서 요구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기도 함.

그런데, 현행법은 시각장애나 신체장애를 지닌 선거인 등에 대해서만 투표보조인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발달장애 등 정신적 장애 또는 고령으로 혼자 기표소에 들어가서 기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선거인의 참정권 행사를 제약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⁸⁰⁾

78)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①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또는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할인하는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한 실시방법 등을 정당·후보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79)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참정권)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에 장애인이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 전달,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보조원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에 장애인에게 후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정도의 수준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80) 투표 보조, 발달장애인은 안 된다? [서초동M본부](MBC, 2024. 10. 16.)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6700_36438.html

다만, 실무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1인도 가능)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에게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고, 투표보조의 가능 여부는 투표장에서 장애 등록 여부, 청각·발달 등 장애유형과 무관하게 선거인 또는 동행인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상태’임을 설명하는 경우 투표관리관이 이를 적극 고려하여 투표 보조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함.⁸¹⁾

이와 관련하여 비록 1심 판결이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발달장애 선거인들이 제기한 2023가합52091 차별구제청구 등 사건에서 지방선거 및 대통령선거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투표보조가 허용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간접차별 및 정당한 편의제공거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적극적 구제조치로서 이 판결 확정일 이후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선거와 국민투표에서 발달장애선거인들에게 가족 또는 원고들이 지명하는 2명의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도록 판결한 바 있음(2024. 10. 10.).⁸²⁾

이에 **최보윤의원안**은 시각 또는 신체장애 외에 발달장애 등 정신적 장애 또는 고령으로 인하여 혼자 기표소에 들어가서 기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선거인도 기표소에 투표보조인을 동행할 수 있도록 함으

81)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관리매뉴얼(투표보조 관련 내용 발췌)

8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사건에 대해 2025년 1월 8일 항소하였다고 밝힘.

로써, 장애의 종류 등에 관계없이 만 18세 이상의 선거인이라면 누구든지 투표할 수 있도록 한 보통선거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여짐.

다만,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정신적 장애는 그 특성상 시각 또는 신체장애와 달리 장애로 인해 혼자 기표소에 들어가서 기표하는 것이 곤란한지 여부가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고,⁸³⁾ 대리투표⁸⁴⁾가 발생할 위험성도 있음.

또한, 설사 외부에 드러나더라도 곤란함의 정도(현저한지 여부)는 선거인 개개인과 투표관리관 등 투표소 내의 인력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므로 일관성 있고 공정한 선거사무의 진행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봄.

83) 현행법의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의 경우, 대법원이 해당 선거인을 시력상실 등 시각장애로 인하여 투표용지에 기표할 해당 후보자의 표시를 전형 분간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기표행위를 할 수 없거나 또는 손 등 신체의 장애로 말미암아 직접 자신의 신체를 이용하여 해당 후보자의 란에 기표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선거인으로 판시한 바 있고,(대법원 1999. 7. 13. 선고 99우48 판결)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한 ①손 떨림 등이 심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투표할 수 없는 자, ②시지각 협응능력(눈의 시각정보와 손의 운동정보가 유기적으로 맞물려 작용하는 능력) 저하등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투표할 수 없는 자 등에 한정하여 투표보조인의 동행을 인정하고 있음.

84) 정신적 장애인의 경우에는 자신의 의사표현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는 장애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장애인 본인이 아닌 투표보조인의 의사가 우선시 되는 투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기현석,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투표보조인 제도”, 토지공법연구 제97집, 2022.3.)

둘째, 개정안은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이 동행할 수 있는 투표보조인으로 현행 규정과 달리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 외에 ‘공적 보조원’을 추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념이 불명확하여 ‘공적 보조원’의 개념 및 그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봄.

따라서, 개정안들의 입법화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선거인의 실질적인 참정권 보장이라는 개정안 취지와 함께 개정안 내용에 대한 구체화 및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신적 장애 또는 고령에게 투표 보조를 허용해 참정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혼자 기표소에 들어가서 기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에 대한 판단의 어려움, 대리투표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18. 재외투표관리관 직무에 교통약자 등의 투표소 접근 편의성 보장을 위한 조치 추가

최보윤의원안은 재외투표관리관의 직무에 고령자, 장애인 및 임산부 등 교통약자와 격리자 등의 재외투표소 접근 편의성 보장을 위한 조치를 추가하려는 것임.

현행	최보운의원안
제218조의3(재외선거관리위원회와 재외투표관리관의 직무) ① (생략) ② 재외투표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2. (생략) 3. <u>재외투표소 설비</u> 4. 5. (생략)	제218조의3(재외선거관리위원회와 재외투표관리관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2. (현행과 같음) 3. <u>재외투표소 설비,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와 격리자들의 재외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제반 시설의 설치, 적절한 재외투표소 위치 확보 등의 조치</u> 4. 5.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재외선거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 공관에 재외투표관리관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분 해당 공관의 장이 그 직을 겸임하고 있음.⁸⁵⁾

재외투표관리관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과 국외부재자신고의 접수 및 처리,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의 홍보·지원, 재외투표소 설비,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운영 지원 등 재외투표소 선거의 총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85)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재외투표관리관의 임명) ① 재외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관마다 재외투표관리관을 둔다.

② 재외투표관리관은 공관의 장으로 한다. 다만, 공관의 장과 총영사를 함께 두고 있는 공관의 경우 그 공관의 장이 총영사를 재외투표관리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런데, 지난 22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재외투표소의 설치 층수별 현황을 보면, 승강기등 편의시설 설치 여부 등은 파악할 수 없었으나, 총 220개 투표소 중 설치장소가 1층이 아닌 지하나 지상 2층 이상에 설치된 투표소가 83개소(37.7%)에 달하여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이나 고령자 및 임산부가 제3자의 도움 없이는 투표하기 어려운 여건인 것으로 추정됨.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재외투표소 설치·운영현황]

(단위: 개)

총 투표소수	지하	1층	2층	3층이상	승강기등 편의시설 설치된 투표수 (1층 제외)
220	4 (1.8%)	137 (62.3%)	19 (8.6%)	60 (27.3%)	자료 없음

자료: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총람 자료 재구성

이에 최보윤의원안은 재외투표관리관의 직무에 고령자, 장애인 및 임산부 등 교통약자와 격리자 등의 재외투표소의 접근 편의성 보장을 위한 조치를 추가함으로써, 이를 통해 교통약자 및 격리자 등의 실질적 참정권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재외투표관리관의 직무에 ‘교통약자와 격리자 등의 재외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제반 시설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재외공관 특성상 해당 국가의 법령과 공관의 가용 예산 등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 ‘제반 시설의 설치’라는 표현 대신 ‘접근 편의 보장 등’으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봄.

참고로, 현행 재외투표관리관의 직무에 교통약자 등의 재외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한 조치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현행법은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와 격리자등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제반 시설의 설치, 적절한 투표소 위치 확보 등의 조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위임하고 있고 (제147조제11항),

현행법 제218조의34제1항과 현행 규칙 제136조의33제1항에 따르면 재외선거에 관하여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른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예산·인력의 범위 내에서 재외투표소에 교통약자를 보조할 투표사무원이나 임시기표소를 운영 중에 있음.

[재외투표소 설치 관련 현행 법령 체계]

「공직선거법」

제147조(투표소의 설치) ②투표소는 투표구안의 학교, 읍·면·동사무소 등 관공서,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주민회관 기타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한다. 다만, 당해 투표구안에 투표소를 설치할 적당한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다른 투표구안에 설치할 수 있다.

⑩ 투표소의 설비,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와 격리자 등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제반 시설의 설치, 적절한 투표소 위치 확보 등의 조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18조의34(준용규정 등) ① 재외선거에 관하여 이 장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법의 다른 규정을 준용한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67조의2(투표소의 설치 및 설비) ① 투표소는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이동약자(이하 이 조에서 “이동약자”라 한다)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하여 1층 또는 승강기 등의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원활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6조의33(준용규정 등) ① 재외선거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규칙의 다른 규정을 준용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하여 교통약자의 투표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재외투표소는 원칙적으로 공관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공관마다 지리적·환경적 여건이 다양한 점, 투표소 장소 협조가 원활하지 않는 점 등으로 교통약자 등의 접근 편의시설을 갖춘 투표소를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서미화·용혜인의원안1]

19. 장애인인 피고용인에게 투표시간 청구 가능 안내 의무화 등

서미화·용혜인의원안1은 고용주가 피고용인 중 장애선거인에 대해 장애의 유형·정도 및 특성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직접 또는 근로지원인⁸⁶⁾ 등을 통해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도록 추가적인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용인에게 투표시간 청구 가능 안내를 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8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을 하고 있으며, 업무에 필요한 핵심 업무 수행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 장애인 근로자가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임.

현행	서미화·용혜인의원안1
제6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①·② (생략) ③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단서 신설>	제6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다만, 고용된 사람 중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장애의 유형·정도 및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본인에게 직접 알리거나 근로지원인 등 고용된 사람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사람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신설> 2. (생략) 3. 제65조제4항 단서를 위반하여 점자형 선거공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현행과 같음) 1의2. 제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2. (현행과 같음) 3. ----- ---점자형 선거공보 및 발달장애 인용 선거공보-----

3의2. ~ 5. (생략)	3의2. ~ 5. (현행과 같음)
④ ~ ⑫ (생략)	④ ~ ⑫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피고용인의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법 제6조의2제1항), 이에 따라 고용주는 피고용인이 투표 하기에 필요한 시간을 의무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며(법 제6조의2제2항),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법 제261조제3항제1호).

또한, 고용주는 피고용인의 참정권 보장 및 고용관계 내의 권리행사에 대한 정보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해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홈페이지,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피고용인이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있음(법 제6조의2제3항).

그런데, 피고용인이 장애선거인인 경우 고용주가 인터넷 홈페이지나 사보 등을 통해 비장애인과 같이 일률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지하는 방식으로는 장애의 유형이나 정도에 따라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장애인의 특성과 정보 접근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보다 개별적이고 맞춤형으로 관련 정보를 안내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서미화·용혜인의원안¹은 피고용인이 장애로 인하여 고용주가 알리는 투표시간 보장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정보습득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직접 또는 근로지원인 등을 통해 이를 알리도록 함으로써, 장애로 인하여 선거관련 정보습득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선거인의 실질적 참정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그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서미화·용혜인의원안¹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불이익처분” 측면에서 개정안은 고용주가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용인에게 투표시간 청구 가능 사실을 안내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를 신설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적절성과 해당 금액의 적정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현행법에서 고용주로 하여금 투표시간 청구 가능 사실을 피고용인에게 안내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것은, 피고용인의 투표시간 보장⁸⁷⁾을 위한 절차적 수단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바, 안내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도 위반행위의 고의·과실 여부 등을 구분하지 않고,⁸⁸⁾ 고용주에 일률

87) 「공직선거법」

제6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② 고용주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

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피고용인의 실질적인 선거권 침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주에게 과도한 행정 책임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

또한, “투표시간 청구 가능 고지의무” 위반이 실제 투표권의 침해로 직결되는 정도와 “투표시간 보장 불이행”⁸⁹⁾의 위반행위가 갖는 침해의 정도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할 수 있는바, 양자의 행위에 대해 동일한 과태료 상한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고용주가 장애선거인에게 투표시간 청구 관련 정보를 직접 전달하거나 근로지원인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안내한 경우, 객관적 증빙자료 확보가 곤란하여 과태료 부과 시 입증책임의 소재가 불명확해질 수 있는바,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장애선거인에 대한 투표시간 청구 관련 정보의 고지방법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편, 대표발의 의원실에 확인한 결과, 개정안의 취지는 장애인에 대한 안내의무 위반 시에만 고용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인바,

88)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고의 또는 과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89) 「공직선거법」

제6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①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고용주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
③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투표시간을 보장하여 주지 아니한 자

이럴 경우 안 제261조제3항제1호의2 중 “제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를 “제6조의2제3항단서를 위반하여”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하여 피고용인이 장애인인 경우의 고지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할지 여부는 국회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률 조항은 명확성의 요건이 더욱 엄격해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서미화·용혜인의원안1], [박민규의원안]

20. 금치산자제도 폐지에 따른 선거권 제한규정 정비

서미화·용혜인의원안1은 선거권이 없는 자의 범위에서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를 삭제하고, 박민규의원안은 현행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가 아닌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사람’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현행	서미화·용혜인의원안1	박민규의원안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1. <u>금치산선고를 받은 자</u>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 ----- ----- -----. <u><삭 제></u>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 ----- ----- -----. <u>1. 성년후견개시 심판</u>

2. ~ 4. (생략) ② · ③ (생략) 제218조의8(재외선거인명부의 작성) ① ~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선거일 전 150일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선거인명부의 작성 및 해당 선거 직전에 실시한 대통령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정보를 전산조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제1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u>금치산자</u>에 관한 정보.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정보를 관리하는 구·시·	2. ~ 4.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u>을 받은 사람</u> 2. ~ 4.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18조의8(재외선거인명부의 작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 ----- ----- ----- ----- ----- ----- ----- ----- ----- ----- 1. · 2. (현행과 같음) 3. ----- -----<u>피성년후견인</u>----- ----- ----- -----
--	---	--

읍·면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 ----- ----- -----.
4. (생략)		4. (현행과 같음)
⑤ · ⑥ (생략)		⑤ · ⑥ (현행과 같음)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음.

한편, 「민법」 개정시(2011.3.7.) 부칙 제2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에 대하여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개시되거나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 또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한
때(2018.6.30.)에는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는 무효가 되도록 규정하
였음.⁹⁰⁾

90) 「민법」 <법률 제10429호, 2011.3.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
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개시
되거나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 또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는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이로 인해 2018. 7. 1.부터는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면서 법적으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나, 이후 「공직선거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는 별도로 개정이 되지 않아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금치산자는 물론 피성년후견인에 대해서도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음.

[금치산자와 피성년후견인의 비교]

구 분	금치산자	피성년후견인
정 의	· 심신상실의 상태(常態)에 있는 사람으로서 금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	·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
용 어	· 금치산이라는 부정적 용어 사용	· 부정적 용어 폐지
대 상	· 중증 정신질환자에 국한	· 치매노인 등 고령자까지 확대
보호범위	· 재산행위	· 의료, 요양 등 복리영역까지 확대
독 자 적 행 위 권	· 독자적인 법률행위 불가	· 일용품 구입 등 일상 행위 가능
공 시	· 제한 없는 공시(가족관계등록부)	· 이해관계 있는 자의 법원기록 조회로 제한적 공시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

이에 서미화·용혜인의원안1은 「민법」 개정으로 도입된 성년후견인 제도의 취지가 종전의 금치산자와 달리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능력을 최대한 존중하는 데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선거권 보장을 기존 금치산자를 법률상 삭제하여, 장애인에 대한 선거권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박민규의원안은 개정 조항에 따라 관련 용어를 종전의 “금치산자”에서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은 사람”, 즉 피성년후견인으로 변경하여, 종전 금치산자에게 선거권을 제한하였던 「공직선거법」상의 선거권 제한 법리를 존중하면서 이를 개정 입법 체계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 「민법」의 입법 취지를 존중하려는 것임.

이에 따라 각 개정안은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와 더불어, 피성년후견인 중에서도 종전의 금치산자에 해당하여 실질적으로 선거권 행사가 곤란한 경우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선거권 제한을 둘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정안과 같이 금치산자를 단순 삭제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며 같은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2014.10.8.)한 바 있음.

[서미화·용혜인의원안1]

21. 발달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 작성 등

서미화·용혜인의원안1은 후보자로 하여금 기존의 점자형 선거공보 외에 발달장애선거인을 위한 별도의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를 추가로 작성하고, 선거공보에 한하여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후보자에 대해서는 발달장애인용 선거공보의 작성·제출을 의무화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장애인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현행과 개정안의 비교]⁹¹⁾

선거공보	현행	개정안
작성 및 제출	점자형 선거공보	발달장애인용 선거공보도 포함
인쇄물 접근성 바코트 방식	음성·점자 출력 바코드로 점자형 선거공보 대체 가능	발달장애인을 위한 쉬운 설명 영상 출력 바코드로도 대체 가능
관련 행정조치	시각장애인 대상 주소 조사 및 통보	발달장애인까지 포함하여 조사·통보 의무 확대
명칭 및 포함 범위	점자형 선거공보 포함	발달장애인용 선거공보 포함
벌칙	(신 설)	대통령·지역구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시 발달장애인용 선거공보 미제출 시 1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선거공약서	현행	개정안
작성 및 제출	점자형 선거공약서	발달장애인용 선거공약서 포함

현행법⁹²⁾에 따르면 후보자는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면서,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는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제출을 의무화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한편,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별도의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의 작성·제출은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점자형 선거공약서에 한하여 후보자가 이를 작성하는 경우 그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⁹³⁾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시각장애선거인과 다르게 발달장애선거인을 위하여는 별도로 후보자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고 있어 발달장애선거인의 후보자에 대한 선거정보 획득이 원활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⁹⁴⁾

91) 개정안의 신규대비표는 참고자료 참조

92) 「공직선거법」

제65조(선거공보) ④ 후보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거공보 외에 시각장애선거인(선거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시각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위한 선거공보(이하 “점자형 선거공보”라 한다) 1종을 제2항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의 두 배 이내에서 작성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되,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93)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보자를 위하여 부담한다. 이 경우 제3호의2 및 제5호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2. 제65조에 따른 점자형 선거공보(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후보자가 제출하는 저장매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작성비용과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 및 같은 조 제9항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포함한다) 및 전단형 선거공보의 발송비용과 우편요금

3. 제66조(선거공약서)제8항의 규정에 따른 점자형 선거공약서의 작성비용

94) 경향신문(2024.3.12.), “공약집도, 용지도 어렵지만 투표할게요.. 생애 첫 투표 앞둔 발달장애인

이에 서미화·용혜인의원안¹은 후보자로 하여금 발달장애선거인을 위한 별도의 후보자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 등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 발달장애선거인의 알 권리와 실질적 참정권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개정안의 상세 내용 - 선거공보 관련(제65조)]

구 분	현 행	개 정 안
발달장애인용 선거공보 작성 §65④	후보자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 (임의)	후보자 점자형· <u>발달장애인용</u> 선거공보 작성 (임의)
	대통령·지역구국회의원·지방자치 단체장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제출 (의무)	대통령·지역구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점 자형· <u>발달장애인</u> 선거공보 작성·제출(의무)
	음성·점자 형태의 인쇄물 바코드로 대체 가능	음성·점자 및 이해하기 쉬운 영상 형태의 인 쇄물 바코드로 대체 가능
제출·발송 §65⑥	대통령 선거의 경우 점자형 선거 공보 포함(의무)	대통령 선거의 경우 점자형· <u>발달장애인용</u> 선 거공보 포함(의무)
장애인 조사 §65⑦	지자체장이 시각장애선거인 정보 만 선관위에 통보	지자체장이 시각장애선거인· <u>발달장애선거인</u> 정보 통보
후보자 정보 공개 §65⑧	점자형 선거공보에 후보자 정보 개제(의무)	점자형· <u>발달장애인용</u> 선거공보에 후보자 정 보 개제(의무)
저장매체 발송 §65⑪	디지털 파일로 전환한 저장매체에 점자형 선거공보 정보 발송	디지털 파일로 전환한 저장매체에 점자형· <u>발 달장애인용</u> 선거정보 발송
저장매체 발송 §65⑫	점자형 선거공보의 규격·제출기한 위반 시 미접수	점자형· <u>발달장애인용</u> 선거공보의 규격·제출 기한 위반 시 미접수
벌칙 §261	(신 설)	<u>발달장애인용</u> 선거공보 미제출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권익옹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 역시 이러한 지원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⁹⁵⁾

다만,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은 발달장애선거인을 위한 별도의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의 작성과 관련하여 재정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부담 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⁹⁶⁾

참고로, 예산정책처의 추계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 작성을 실시하는 경우, 추가 재정소요는 2026년 1억 2,900만원, 2030년 3억 7,5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5억 4,500만원(연평균 1억 900만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계됨.

[발달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 작성 관련 추가 재정소요]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지선)	2027	2028 (국선)	2029	2030 (대선·지선)	합계	연평균
발달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 작성	123	—	41	—	334	498	100
발달장애인을 위한 선거공약서 작성	6	—	—	—	41	47	9

- 주: 1. 본 추계는 재정수반요인 중 추계가 가능한 재정수반요인에 한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이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
 2. 발달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의 경우, 이해하기 쉽도록 면수를 2배 증가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
 3. 추계에 필요한 후보자 수 등은 직전 공직선거의 실적치와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95)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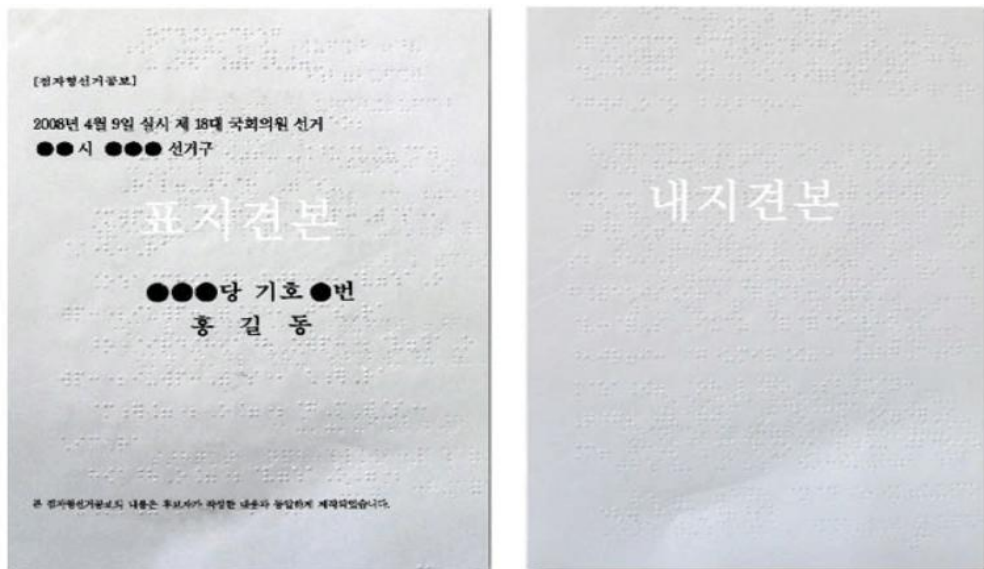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장애로 인하여 차별을 받는 등 권리가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권익옹호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96) 점자형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의 작성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함.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제3항제3호)

둘째, 현행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는 표시된 글자를 「한국점자 표기의 기본원칙」에 따라 일률적으로 작성하면 되는 데 반해, 발달장애인⁹⁷⁾을 위한 선거공보의 작성방법에 관하여는 현재까지 명확한 작성지침 등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시점에서 실행 가능성 측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점자형 선거공보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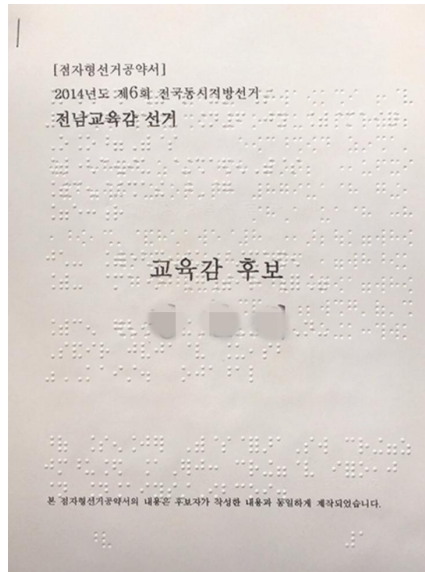


97)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장애인을 말한다.
 - 가. 지적장애인: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 나. 자폐성장애인: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다.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점자형 선거공약서 예시]



한편, 개정안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작성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현행법상 과태료 구간별 의무위반사항(법 제261조)]

구분		의무위반사항(예시)
제1항	5천만원 이하	· 재산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선거인 등을 매수하거나 이해유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금품등을 요구한 경우
제2항	3천만원 이하	· 시정명령·정정보도문의 게재명령을 통보받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지 아니한 경우
제3항	1천만원 이하	· 고용주가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여 주지 않은 경우 ·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4항	5백만원 이하	·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소의 설치 관련 협조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제6항	3백만원 이하	· 방송광고, 방송연설 등과 관련된 규정을 위반한 경우 ·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으로서 동행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제7항	2백만원 이하	· 선거에 관해 현행법이 규정하는 신고, 제출 의무를 해태한 경우 · 투표용지모형을 훼손, 오손한 경우
제8항	1백만원 이하	· 참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 여론조사 기관 변경등록 신청의무를 위반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나, 국내의 경우 발달장애인을 위한 자료 제작과 관련한 연구가 매우 부족하고, 관련 연구기관이나 자료를 작성할 수 있는 업체 현황 파악도 어려운 점, 발달장애인 선거공보 등 작성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할 경우 새로운 재정부담이 발생하게 되고, (예비)후보자가 부담하게 할 경우 후보자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기회 불균등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서미화 · 용혜인의원안1
제65조(선거공보) ① ~ ③ (생략)	제65조(선거공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후보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거공보 외에 시각장애선거인(선거인으로서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시각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위한 선거공보(이하 “점자형 선거공보”라 한다) 1종을 제2항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의 두 배 이내에서 작성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되,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④ ----- ----- ----- ----- ----- -----1종과 발달장애선거인(선거인으로서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하여 이해하기 쉽게 설명된 선거공보(이하 “발달장애인용 선거공보”라 한다) 1종을----- ----- -----각각 작성할 수 있다. ----- -----점자형 선거공보 및 발달장애인용 선거공보-- ----- <u>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점자형 선거공보를,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이해하기 쉬운 영상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발달</u>

여야 한다.

⑧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를 포함한다)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내용(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정보공개자료”라 한다)을 그 둘째 면에 게재하여야 하며,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대하여 소명이 필요한 사항은 그 소명자료를 함께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둘째 면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와 그 소명자료만을 게재하여야 하며, 점자형 선거공보에 게재하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내용은 책자형 선거공보에 게재하는 내용과 똑같아야 한다.

1. ~ 5. (생략)

⑨·⑩ (생략)

⑪ 후보자가 시각장애선거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을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로 전환하여 저장한 저장매체를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를 포함한다)와 같이 제출하는 경우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함께 발송하여야 한다.

-----.

⑧ -----

-----점자형 선

거공보 및 발달장애인용 선거공보-

-----.

-----.

1. ~ 5. (현행과 같음)

⑨·⑩ (현행과 같음)

⑪ -----

-----점자형 선거공보

및 발달장애인용 선거공보-----

-----.

⑫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항을 위반하여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후보자정보 공개자료를 게재하지 아니하거나, 책자형 선거공보의 둘째 면이 아닌 다른 면(둘째 면이 부족하여 셋째 면에 연이어 게재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게재하거나, 그 둘째 면에 후보자정보 공개자료와 그 소명자료 외의 다른 내용을 게재하거나, 선거공보의 규격·제출기한을 위반한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⑬·⑭ (생략)

제66조(선거공약서) ① ~ ⑦ (생략)

⑧ 제64조제3항·제8항 및 제65조제4항(단서는 제외한다)은 선거공약서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벽보” 또는 “책자형 선거공보”는 “선거공약서”로, “작성하여 보관 또는 제출할”은 “작성할”로, “점자형 선거공보”는 “점자형 선거공약서”로 보며, 점자형 선거공약서는 선거공약서와 같은 종류로 본다.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⑫ -----

-----점자형 선거공보 및 발달장애인용 선거공보-----

-----.

⑬·⑭ (현행과 같음)

제66조(선거공약서)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

-----“점자형 선거공보”는 “점자형 선거공약서”로, “발달장애인용 선거공보”는 “발달장애인용 선거공약서”로 보며 점자형 선거공약서와 발달장애인용 선거공보는-----
-----.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신설> 2. (생략) 3. 제65조제4항 단서를 위반하여 <u>점자형 선거공보</u>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 3의2. ~ 5. (생략) ④ ~ ⑫ (생략)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현행과 같음) 1의2. 제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u>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u> 2. (현행과 같음) 3. ----- ---<u>점자형 선거공보 및 발달장애 인용 선거공보</u>----- 3의2. ~ 5. (현행과 같음) ④ ~ ⑫ (현행과 같음)
---	---

22. 교통약자의 투표소 및 사전투표소 접근 편의성 보장

서미화·용혜인의원안1은 현재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위임되어 있는 교통약자를 위한 투표소 설치장소의 범위를 법률로 상향하는 한편, 해당 설치기준을 사전투표소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현행	서미화·용혜인의원안1
<u>第147條(投票所の 設置)</u> ① (생략) ② 투표소는 투표구안의 학교, 읍·면·동사무소 등 관공서,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주민회관 기타 선거인이 투표하기 <u>편리한 곳에</u> 설치한다. 다만, 당해 투표구안에 투표소를 설치할 적당한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다른 투표구안에 설치할 수 있다. ③ ~ ⑪ (생략)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① ~ ③ (생략) ④ 사전투표소 설치 장소의 제한·사용협조, 설비, 사전투표사무원의 추천 협조 등에 관하여는 <u>제147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u>, 제10항 및 제11항을 준용한다. ⑤·⑥ (생략)	<u>제147조(투표소의 설치)</u>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편리한 곳으로서 승강기·경사로 등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u>----- -----. -----. ③ ~ ⑪ (현행과 같음)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u>제147조제2항부터</u>----- -----. ⑤·⑥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투표소와 사전투표소의 설치를 구분하여 규정⁹⁸⁾하는 한편, 투표소에 한하여 투표구안의 학교, 읍·면·동사무소 등 관공서,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등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법 제147조제2항), 투표소의 설비,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와 격리자등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제반 시설의 설치, 적절한 투표소 위치 확보 등의 조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위임하고 있음(법 제147조제11항).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은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하여 1층 또는 승강기 등의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 투표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원활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규칙 제67조의2).

2013년 재·보궐선거에서 사전투표가 도입된 이래 최근 사전투표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전투표소에도 고령자·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접근 편의시설 설치와 적절한 위치 선정 등 일반 투표소와 동일한 수준의 편의 조치가 요구되고 있음.⁹⁹⁾

98) 「공직선거법」

제147조(투표소의 설치)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99) “승강기 없는 3층에 사전투표소가… ‘소쿠리’ 선관위, 이동약자 배려도 부실”, 조선일보, 2022.4.9.

[사전투표율의 변화]

(단위: %)

제20대 국선	제19대 대선	제7회 지선	제21대 국선	제20대 대선	제8회 지선	제22대 국선
12.2	26.1	20.1	26.7	36.9	20.6	31.3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제22대 국회의원선거 총람)

[투표소 설치 관련 현행 법령 체계]

「공직선거법」

제147조(투표소의 설치) ②투표소는 투표구안의 학교, 읍·면·동사무소 등 관공서,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주민회관 기타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한다. 다만, 당해 투표구안에 투표소를 설치할 적당한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다른 투표구안에 설치할 수 있다.

⑪ 투표소의 설비,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제반 시설의 설치, 적절한 투표소 위치 확보 등의 조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67조의2(투표소의 설치 및 설비) ① 투표소는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이동약자(이하 이 조에서 “이동약자”라 한다)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하여 1층 또는 승강기 등의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원활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 - 투표소 설치장소 선정기준

- 투표구안의 생활 중심지로 선거인이 잘 알고 있고 교통이 편리한 곳
- 투표하기 편리하고 투표관리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적정면적 규모의 장소
- 장애인 등의 투표편의 시설이 있는 다음의 장소
 - 투표소는 1층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층 투표소가 없는 경우에는 승강기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있는 곳
 - 장애인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임시경사로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곳

지난 22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투표소 및 사전투표소의 설치 층수별 현황을 보면 설치장소가 1층이 아닌 지하나 지상 2층 이상에 설치된 투표소 및 사전투표소는 각각 2,915개소(20.4%), 1,890개소(53.0%)였으며, 이 중 투표소는 5.9%인 170개소, 사전투표소는 5.5%인 197개소에 승강기등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이나 고령자 및 임산부가 제3자의 도움 없이는 투표하기 어려운 여건이었던 것으로 보임.¹⁰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소 및 사전투표소 설치 층수별 현황]

(단위: 개)

구분		지하	1층	2층	3층이상	승강기등 편의시설 설치된 투표수 (1층 제외)
투표소	14,259	425 (3.0%)	11,344 (79.6%)	1,501 (10.5%)	989 (6.9%)	2,745 (94.1%)
사전투표소	3,565	104 (2.9%)	1,675 (47.0%)	905 (25.4%)	881 (24.7%)	3,368 (94.5%)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제22대 국회의원선거 총람)

이에 서미화·용혜인의원안¹은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투표소 및 사전투표소를 승강기 및 경사로 등의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 등의 선거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100)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승강기등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사전)투표소의 경우 고령자·장애인 등 선거인이 요구할 경우 1층 또는 투표소 출입구에 별도의 임시기표소를 설치하여 투표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였다는 입장임.

다만, 법률로 투표소 및 사전투표소를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승강기 및 경사로 등의 편의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정할 경우 모든 지역에서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투표소 및 사전투표소를 확보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이와 같은 현실적 문제점을 고려하여 「공직선거관리규칙」에는 투표소를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적절한 장소가 없는 경우 예외로 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사전투표소의 경우에도 교통약자 등의 사전투표소 접근 편의성을 보장하기 위한 유사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규칙의 개정이 시급할 것으로 보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교통약자의 투표 편의를 제고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동의하나, 투표구마다 지리적·환경적 여건이 다양하므로 투표소 장소를 승강기 및 경사로 등 편의시설을 구비한 시설로 한정할 경우 투표장소 설비에 필요한 적정 넓이의 공간 부족 등으로 장소 확보에 한계가 있는 점, 공공기관 또는 민간시설 등에서 투표소 장소 협조가 원활하지 않는 점 등으로 장소 확보가 제한될 뿐만 아니라, 일부 지역의 경우 편의시설이 설치된 장소가 외곽에 있어 선거인의 접근성이 저하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임.

23. 투표용지에 소속정당을 상징하는 마크·심벌 및 후보자 사진 게재 등

서미화·용혜인의원안1은 일반(비장애이용) 투표용지에도 소속정당을 상징하는 마크나 심벌의 표시와 후보자의 사진을 게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각장애인을 위한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의 제작·사용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현행	서미화·용혜인의원안1
第150條(投票用紙의 政黨·候補者의 掲載順位 등) ① 投票用紙에는 候補者의 記號·政黨推薦候補者의 所屬政黨名 및 姓名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無所屬候補者는 候補者의 政黨推薦候補者의 所屬政黨名의 欄에 “無所屬”으로 표시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기호와 정당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 ⑩ (생략)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① ~ ⑦ (생략) ⑧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는 視覺障礙로 인하여 자신이 記票를 할 수 없는 選舉人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特殊投票用紙 또는 投票補助用具를 제작·사용할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순위 등) ① -----소속 정당명(소속정당을 상징하는 마크나 심벌의 표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성명 및 사진-----. ② ~ ⑩ (현행과 같음)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시각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를 제작·사용하여야 한다.

수 있다. <신 설> ⑨ (생 략)	⑨ <u>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와 그 소속정당을 식별하기 어려운 선거인의 투표를 보조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보자의 사진 또는 정당마크가 표시된 투표보조용구를 제작·사용하여야 한다.</u> ⑩ (현행 제9항과 같음)
--	---

먼저, 일반(비장애인용) 투표용지에 소속정당을 상징하는 마크·심벌 및 후보자의 사진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과 관련하여,

현행법은 일반(비장애인용)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 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 및 성명을 문자만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시각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 등이 아닌 비장애인 중에서도 정당 및 후보자를 쉽게 식별하지 못하는 고령층이나 장애인의 범주에는 포함되지는 않지만 다소 낮은 문해력을 가진 유권자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들 역시 문자 중심의 정보만으로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 및 후보자를 정확히 식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이들의 실질적인 투표권 행사가 제약될 우려가 있을 수 있음.

이에 서미화·용혜인의원안1은 기존 문자 중심의 투표용지에 소속정당을 상징하는 마크·심벌 및 후보자의 사진을 동시에 기재하려는 것으

로, 이를 통해 유권자의 선거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다만, 그림투표용지 도입으로 인지도가 높은 후보자가 유리할 수 있어 후보자 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및 새로운 투표용지 제작으로 인한 행정적 부담과 추가 예산 소요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에 정당 마크 및 후보자의 사진을 표시하는 것은 사진 표시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여부, 투표용지 작성비용 증가에 따른 예산 소요, 투표용지 길이 증가에 따른 개표시간 연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임.

참고로, 외국 사례를 보면 투표용지에 후보자 사진을 포함시키는 국가로 아일랜드가 있으며 정당로고를 포함시키는 국가로 영국, 미국, 프랑스, 포르투갈, 리투아니아 등이 있음.

[후보자 사진, 정당로고가 포함된 외국투표용지]

유형	국 가 명
후보자 사진	아일랜드
정당로고	영국, 미국, 프랑스, 스페인, 칠레,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리투아니아, 멕시코,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튀르키예

[illegible]

다음,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의 제작 및 사용을 의무화하고, 후보자 및 소속정당을 식별하기 어려운 선거인을 위해 후보자의 사진 또는 정당마크가 표시된 투표보조용구를 제작 및 사용하는 내용과 관련하여,

다만, 시각장애인 및 발달장애인의 투표보조용구 제작·사용을 의무화할 경우 투표 편의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종류 및 지역마다 입후보한 정당·후보자가 달라 별도의

[박균택의원안]

박근혜의원안은 점자형 선거공보를 의무적으로 작성·제출해야 하는 공직선거의 종류에 지방의회의원선거를 추가하고, 이에 따른 선거공보의 작성·제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 153 –

자형 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되,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
이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
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
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⑤ ~ ⑩ (생략)

⑪ 후보자가 시각장애선거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책자형 선거공보
의 내용을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
되는 디지털 파일로 전환하여 저장
한 저장매체를 책자형 선거공보(점
자형 선거공보를 포함한다)와 같이
제출하는 경우 배부할 지역을 관할
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함께 발송하여야 한다.

⑫ ~ ⑭ (생략)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①
·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費用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
體가 候補者를 위하여 부담한다.
이 경우 제3호의2 및 제5호의 비용
은 국가가 부담한다.

1. (생략)

2. 제65조에 따른 점자형 선거공보
(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후보자
가 제출하는 저장매체를 포함한

-----.

⑤ ~ ⑩ (현행과 같음)

⑪ -----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
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와 같이-----
후보자들이 제출한 디지털 파일을
취합한 후 선거별로 하나의 저장매
체에 저장하여 이를 책자형 선거공
보와-----.

⑫ ~ ⑭ (현행과 같음)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현행과 같음)

2. ----- 선거공보
의-----

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작성 비용과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 및 같은 조 제9항의 후 보자정보공개자료를 포함한다) 및 전단형 선거공보의 발송비용과 우편요금	----- ----- ----- ----- ----- -----
3. ~ 7. (생략)	3. ~ 7. (현행과 같음)
④ · ⑤ (생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현행법¹⁰¹⁾에 따르면 후보자는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면서,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한하여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제출을 의무화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음.

한편, 지방의회의 기능과 책임이 과거에 비해 외형적으로나 질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지방의회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으며, 이와 함께 지방선거의 투표율 역시 상승하고 있음.

101) 「공직선거법」

제65조(선거공보) ④ 후보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거공보 외에 시각장애선거인(선거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시각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위한 선거공보(이하 “점자형 선거공보”라 한다) 1종을 제2항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의 두 배 이내에서 작성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되,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보자를 위하여 부담한다. 이 경우 제3호의2 및 제5호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2. 제65조에 따른 점자형 선거공보(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후보자가 제출하는 저장매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작성비용과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 및 같은 조 제9항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포함한다) 및 전단형 선거공보의 발송비용과 우편요금

[동시지방선거 투표율 변화]

(단위: %)

구분	2002년 (제3회)	2006년 (제4회)	2010년 (제5회)	2014년 (제6회)	2018년 (제7회)	2022년 (제8회)
투표율	48.9	51.6	54.5	56.8	60.2	50.9

자료: 통계청, 지표누리(2025.6.5. 검색)

그러나, 지난 2022년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기준으로 볼 때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이 의무화되어 있지 아니한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후보자는 총 6,544명 중 5,008명 (76.5%)¹⁰²⁾으로 시각장애선거인 다수가 후보자의 공약이나 이력 등의 선거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됨.

이는 현행법상 지방의회의원 후보자는 의무적 점자형 선거공보 제작·제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국회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건이 열악하고 정치자금 수입도 적어, 점자형 선거공보 제작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결과적으로, 시각장애선거인들은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의 정책이나 이력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투표에 임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시각장애선거인의 참정권 실현에 실질적인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음.¹⁰³⁾

10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총람(22.12)

103) 조선비즈, “모로는데 어떻게 뽑아요?...지방선거 후보자 3명 중 2명은 점자형 공보물 내지도 않아, 2022.5.2.6.

이에 **박균택의원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도 점자형 선거공보를 의무적으로 작성·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통해 시각장애선거인의 선거정보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평등한 선거참여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2022년 제8회 동시지방선거를 기준으로 할 때 개정안에 따른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의무 대상자¹⁰⁴⁾는 총 6,544명에 이르나, 현재 점자출판시설수는 전국적으로 36개소에 불과하며, 특히 지역적으로 수도권(20개소)에 편중되어 있는 점¹⁰⁵⁾을 감안할 때 현실적인 집행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둘째,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을 위한 추가적인 예산소요 및 적용대상 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가 의무적으로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 및 제출하는 경우, 2026년 39억 6,200만원, 2030년 42억 8,800만원 등 향후 5년 동안 총 82억 5,000만원(연평균 16억 5,000만원)의 추가적인 예산 소요가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재원 조달 방안 마련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104) 제8회 동시지방선거의 경우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은 총 5,988명이고,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556명으로 총 6,544명임.

105) 서울에 12개소, 인천에 2개소, 경기도에 6개소, 그 밖의 지역에 각각 1개소가 위치에 있으며, 세종시에는 없음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 소요]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지선)	2027	2028 (국선)	2029	2030 (대선·지선)	합계	연평균
발달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 작성	123	—	—	—	4,288	8,250	1,650

주: 본 추계에서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 수가 직전 전국동시지방선거(제8회, 2022년)와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시각장애선거인의 참정권 보장 필요성, 인쇄량 증가에 따라 제한된 기간 내에 이용할 수 있는 점자출판시설의 한계, 예산지출 증가에 대한 재정당국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임.

제공하기 위하여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을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로 전환하여 저장한 저장매체를 <u>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를 포함한다)</u>와 같이 제출하는 경우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u>이를 함께 발송하여야 한다.</u>	----- ----- ----- -----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같이----- 후보자들이 제출한 디지털 파일을 취합한 후 선거별로 하나의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이를 책자형 선거공보와-----.
⑫ ~ ⑭ (생략)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① ·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費用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候補者를 위하여 부담한다. 이 경우 제3호의2 및 제5호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1. (생략) 2. 제65조에 따른 점자형 <u>선거공보</u> (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후보자가 제출하는 저장매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작성비용과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 및 같은 조 제9항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포함한다) 및 전단형 선거공보의 발송비용과 우편요금 3. ~ 7. (생략) ④ · ⑤ (생략)	⑫ ~ ⑭ (현행과 같음)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1. (현행과 같음) 2. ----- <u>선거공보</u> 의----- ----- ----- ----- ----- 3. ~ 7. (현행과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

현행법¹⁰⁶⁾은 후보자가 시각장애선거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을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이하 “디지털파일”이라 함)로 전환하여 저장한 저장매체를 책자형 선거공보와 같이 제출하는 경우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함께 시각장애선거인에게 발송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후보자마다 제출하는 “디지털파일”의 형식이 상이¹⁰⁷⁾하고, 특히 시각장애선거인에게 후보자별로 각각 저장한 여러 개의 저장매체가 발송됨에 따라, 시각장애선거인은 여러 개의 저장매체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선거정보 접근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문제점 발생하고 있음.

이에 **박균택의원안**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별로 제출된 “디지털파일”을 선거별로 하나의 저장매체에 통합 저장하여 시각장애선거인에게 발송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통해 시각장애선거인의 선거정보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이러한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별로 제출된 디지털 파일을 선거별로 하나의 저장매체에 통합하여 발송하는 방식은 행정업무가 집중되는 시기¹⁰⁸⁾에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추가적인 부담을

106) 「공직선거법」

제65조(선거공보) ⑪후보자가 시각장애선거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을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로 전환하여 저장한 저장매체를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를 포함한다)와 같이 제출하는 경우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함께 발송하여야 한다.

107) 음성 또는 점자 등

108) 대통령선거: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까지 제출, 제출마감일 후 3일까지 발송

국회의원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후보자등록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인력 증원 및 예산 배분 등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 후보자가 제출한 “디지털파일을”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통합하여 하나로 제작하는 것은 선거행정 절차가 사무가 집중되는 기간에 업무 과중이 우려되므로 충분한 예산 및 인력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음.

[서미화의원안]

26. 중증장애인 후보자에 대한 선거비용제한액 확대 등

서미화의원안은 공직선거 후보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을 비중증장애인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의 110%로 확대하고, 선거비용 보전 기준을 조정하여 중증장애인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현행 50%에서 상향된 60%를 보전받도록 하며, 5% 이상 10%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도 선거비용의 10%를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서미화의원안
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① ~ ③ (생략) <u><신설></u>	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u> <u>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6</u>

마감일 후 7일까지 제출, 선거일 전 후 10일까지 발송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정치자금법」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회계보고서에 보고된 선거비용으로서 정당하게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선거비용을 말한다]을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국가의 부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선거일후 보전한다.

호 및 제7호에 따른 선거의 후보자가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인 경우 해당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산정한 선거비용제한액에 100분의 11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illegible]

1.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가. (생략) 나.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신설> 2. (생략) ② ~ ⑤ (생략)	1. ----- ----- ----- 가. (현행과 같음) 나.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후보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	--

선거비용은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당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 정당 포함)가 부담하는 비용 등을 의미함.

현행법은 선거비용¹⁰⁹⁾과 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비용¹¹⁰⁾, 선거비용제한액 등을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선거비용을 법률에 의해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선거 과정에서 과도한 비용지출 및 경쟁을 억제하고 금권선거를 방지하여 법에 의한 공정한 선거 및 선거운동을 담보하고 있음.

109) 「공직선거법」

제119조(선거비용 등의 정의) ①이 법에서 “선거비용”이라 함은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당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하며,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부담하는 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비용을 말한다.

1. 후보자가 이 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2. 정당,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가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위법선거운동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3.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이 선임·신고되기 전까지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4.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누구든지 후보자, 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자와 통모하여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110) 「공직선거법」

제120조(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비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이 법에 따른 선거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2. 정당의 후보자선출대회비용 기타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에 소요되는 정당비용
3. 선거에 관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거나 지급하는 기탁금과 모든 납부금 및 수수료
4.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전화료·전기료 및 수도료 기타의 유지비로서 선거기간전부터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지출하여 온 경비
5.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설치 및 유지비용
6.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및 대담·토론자가 승용하는 자동차[제91조(擴聲裝置와 自動車 등의 사용제한)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와 선박을 포함한다]의 운영비용
7. 제삼자가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또는 회계책임자와 통모함이 없이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전신료 등의 비용
8. 제112조제2항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같은 항 제1호마목(정당의 사무소를 방문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2호사목(후보자·예비후보자가 아닌 국회의원이나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본다.
9. 선거일후에 지출원인이 발생한 잔무정리비용
10.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실시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다만,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동안 4회를 초과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본다.

선거비용제한액은 후보자 등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할 수 있는 비용의 상한을 설정함으로써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선거 등 선거별로 그 산정방법이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구체적으로, 대통령선거는 ‘인구수×950원’, 지역구국회의원선거는 ‘1억원+(인구수×200원)+(읍·면·동수×100만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인구수×90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선거는 ‘4억원(인구수 200만 미만이면 2억원)+(인구수×300원)’ 등으로, 대체로 인구수를 기준으로 산정되고 있음.¹¹¹⁾

[공직선거별 선거비용제한액]

구분	선거별 선거비용제한액
대통령 선거	인구수×950원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	인구수×90원
지역구국회의원 선거	1억원+(인구수×200원)+(읍·면·동수×200만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선거	4억원(인구수 200만 미만이면 2억원)+(인구수×300원)
도지사 선거	8억원(인구수 100만 미만이면 3억원)+(인구수×250원)
자치구·시·군의장 선거	9천만원+(인구수×200원)+(읍·면·동수×100만원)
지역구시·도의원 선거	4천만원+(인구수×100원)
비례대표시·도의원 선거	4천만원+(인구수×50원)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 선거	3천5백만원+(인구수×100원)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 선거	3천5백만원+(인구수×50원)

* 선거비용제한액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감안하여 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증감할 수 있고, 여기에 선거사무장 등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 등이 추가적으로 가산됨.

111)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비용제한액은 58,852,819,560원으로, 전국 총 인구수에 950원을 곱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율을 감안한 선거비용 제한액 산정비율(13.9%)을 적용하여 증감하고, 선거사무장 등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하여 최종 산정되었음.

한편, 선거비용보전은 우리 헌법이 채택한 선거공영제¹¹²⁾의 취지에 따라 경제적 능력과 관계없이 유능한 사람이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보자 또는 정당의 선거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로,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경우 후보자가 사망 또는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때에는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그 절반을 보전하도록 하고 있음.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명부에 등재된 후보자 중 당선인이 있을 경우 해당 정당이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함.¹¹³⁾

112) 「대한민국 헌법」

제116조 ①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관련판례: 헌재 2010. 5. 27. 2008헌마491, 판례집 22-1하, 300]

“선거는 국가의 존속과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의 공적 업무를 수행할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행위이므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선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후보자 개인에게 모두 부담시키는 것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자의 입후보를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하여,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부당하게 제한함은 물론 유능한 인재가 국가를 위하여 봉사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선거공영제는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선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후보자 개인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국민 모두의 공평부담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다.”

113)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국가의 부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선거일 후 보전함.

[공직선거별 선거비용 보전]

구분		현행	개정안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지자체장 선거	당선·사망 또는 15% 이상	전액	(현행과 같음)
	10%~15%	50%	[중증장애인] 60%
	5%~10%	-	[중증장애인] 10%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정당지출비용 전액	(현행과 같음)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적인 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된 비용은 보전 대상에서 제외됨.

최근 공직선거에서 선거비용 보전액은 제21대 대통령선거의 경우 887억 6,200만원,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956억 9,200만원에 달함.

[최근 공직선거 선거비용보전액]

(단위: 명, 개, 백만원)

제21대 대통령 선거					
구분		보전청구액		감액	보전금액
계		90,101		1,339	88,762
더불어민주당		45,184		430	44,754
국민의힘		44,917		909	44,008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구분	의원정수	전체 후보자수	보전대상 후보자(정당) 수	보전대상 금액	평균지급액 (후보자당)
전국	300	952	517	95,692	—
비례대표	46	253	4	15,878	3,969
지역구	254	699	513	79,814	155

주 :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비용 감액사유-통상거래가격 초과비용, 미보전대상(선거비용외 정치자금, 법정수당의 지출 등) 선거비용

자료 : 제21대 대통령선거 총람,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총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최근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확대되고 선거를 통해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사회적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후보자로 출마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고,¹¹⁴⁾

장애인 후보자가 비장애인 후보자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조건에서 선거에 참여하고 경쟁할 수 있도록 일정한 추가적 지원조치가 보장될 필요성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특히 중증장애인 후보자의 경우 지지 호소, 명함 배부, 이동 등 기본적인 선거운동 수행에 상당한 제약이 있어 활동보조인과 같은 인적 지원이 필요하며, 유세를 위한 리프트 차량, 선거사무소 건물의 경사로 설치, 음성낭독 또는 웹접근성이 개선된 컴퓨터, 확대경·보청기 등 보조기기와 같은 물적 지원도 요구됨.¹¹⁵⁾¹¹⁶⁾

또한, 장애인 관련 정책에 있어서는 본질적으로 ‘다른 점’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취급이 허용되지 않으며, 실질적 평등 실현을 위하여 국가에 일정한 적극적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원칙의 내용으로 이해됨.¹¹⁷⁾

114) 제22대 총선에서 3명(‘4·10 제22대 총선, 장애인 비례대표 3명 국회 입성’(에이블뉴스, 2024.4.1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37명(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보도자료, 2022.7.4.)의 장애인 후보자가 각 선거에서 당선되었음.

115) 후보자별 장애 유형(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등)과 정도 등에 따라 요구되는 인적·물적 보조 방향 또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

116) 참고로,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비용, 점자형 선거공약서 작성비용, 활동보조인의 수당·실비 및 산재보험료 등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보자를 위하여 부담하고 있음.

117) ‘중증장애인 입후보자의 선거운동’(차성안, 사회보장법연구, 2013.6.)

이에 따라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하여 편의시설, 공학적 보조 기기, 보조인력 등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의무 역시 실질적 평등 실현의 한 요소로 파악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중증장애인 후보자의 경우에도 비장애인 후보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선거비용 및 선거비용제한액을 적용하고 있어, 중증장애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인적·물적 지원이 필요함에도 그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서미화의원안은 공직선거 후보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및 선거비용 보전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보다 원활하게 선거운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중증장애인의 피선거권 확대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중증장애인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5% 이상 10%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도 선거비용 보전을 인정할 경우, 선거비용 보전제도의 취지가 약화될 우려가 있음.

현행 제도는 득표율 10% 미만 후보자에 대해서는 선거비용을 보전하지 않음으로써 주민의 신뢰를 충분히 받지 못한 입후보자에 대해서는 공적 재원을 투입하지 않겠다는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바,¹¹⁸⁾

118) ‘공직 재·보궐선거 비용보전에 관한 연구’(한국행정과 정책연구, 2014.6.)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에 따르면, 개정안과 같이 중증장애인 후보자의 선거비용 보전율을 상향할 경우 추가 재정소요는 2026년 7,400만원, 2030년 8,1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1억 7,200만원 (연평균 약 3,400만원)으로 추계됨.

[공직선거별 선거비용제한액]

(단위: 백만원)

	2026 (지선)	2027	2028 (국선)	2029	2030 (대선·지선)	합계	연평균
중증장애인 후보자 선거비용 보전율 상향 (안 제122조의2제1항)	74	-	17	-	81	172	34

- 주: 1. 중증장애인 후보자 선거비용 보전율 상향(안 제122조의2제1항)은 의무규정 재정수반요인
 2.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가장 최근의 공직선거별 후보자 수, 선거비용 보전 집행액 등을 활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면서 선거비용제한액 및 보전비율의 상향 여부는 그 필요성과 사회적 공감대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임.

[구자근의원안]

27. 선거 여론조사 기준에 노약자·장애인 등의 특성 반영

구자근의원안은 선거 여론조사의 기준에 노약자·장애인 등의 특성을 반영하여 이들이 손쉽게 여론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구자근의원안
제8조의8(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① ~ ⑤ (생략) ⑥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하 “선거여론조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⑦ ~ ⑭ (생략)	제8조의8(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 <u>확보하고 노약자·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조사자의 여론조사 접근성을 높이기</u> ----- ----- ⑦ ~ ⑭ (현행과 같음)

현행법상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조사대상의 대표성 확보, 피조사자에 대한 응답 강요의 금지, 조사 방식의 다양화, 조사지역 전체 유권자의 성별·연령대별·지역별 구성 비율 설정 등 선거여론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운영하고 있음.

[선거여론조사기준(일반기준)]

신뢰성과 객관성	
1	선거여론조사는 그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u>객관적이고 공정하게</u> 이루어져야 한다.
2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조사대상 전체에 대한 <u>대표성을 확보</u> 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3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피조사자 선정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조사대상자가 <u>자발적 의사에 따라 응답자로 참여</u> 하는 조사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4	누구든지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특정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u>유리하거나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표본추출틀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u>
5	누구든지 후보자가 구축하거나 제공한 데이터베이스를 표본추출틀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누구든지 과도한 표본을 조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표본의 크기가 다음 각 호의 수보다 작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피조사자에게 <u>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특정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u>
8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u>그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방법이나 분석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u>
9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u>응답률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u> 하여야 한다.
10	전화조사의 경우, 무선전화를 사용하여 100분의 70 이상 응답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1	누구든지 유선전화만을 사용하여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보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중값 배율	
1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조사지역 전체 유권자의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구성 비율 등을 기준으로 한 가중값 배율을 밝혀야 하며, 가중값 배율이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 있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별 : 0.7~1.5 -연령대별 : 0.7~1.5 -지역별 : 0.7~1.5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다만, 현행 선거여론조사기준이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에 중점을 두어 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조사 참여가 곤란하거나 조사방법의 적합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온바,

특히 장애 유형 및 중증도 등에 따라 조사 응답 방식의 선택 가능성, 조사 문항 제시 방식, 의사소통 보조의 필요성 등이 달라질 수

있음에도 동일한 조사설계가 모든 피조사자에게 실질적으로 동일한 참여기회를 보장하지 못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현행 여론조사 방식이 주로 음성 또는 ARS 방식의 전화조사에 의존하고 있어 청각장애인 등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경우 조사 참여 자체가 곤란하여 그 의사가 여론조사에 충분히 표집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존재함.¹¹⁹⁾

이에 **구자근의원안**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선거여론조사 기준을 설정·공표하는 목적에 노약자·장애인 등 피조사자의 접근성 제고를 명시함으로써, 선거여론조사 기준의 수립 단계에서부터 취약 집단의 조사 참여 여건을 제도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단순히 조사 실시 단계에서의 편의 제공을 넘어, 조사 설계의 기본 원칙에 접근성 요소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특히 고령자, 장애인 등은 신체적·인지적 특성, 정보접근 환경 등의 차이로 인해 조사 방식에 따라 응답 참여 자체가 제한되거나 응답의 정확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는바, 조사 문항 제시 방식, 응답 수단의 다양화, 의사소통 보조수단의 활용 등 구체적 설계 요소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선거여론조사의 대표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119) ‘청각장애인 위해 총선 여론조사 방식 바꿔야’(에이블뉴스, 2020.01.02.)

다만, 노약자·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조사자의 여론조사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할 경우, 현행 전화조사 방식 외에 대면조사나 온라인 조사 등 다양한 조사방식의 병행이 요구될 가능성이 있어 조사기관의 인력·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이는 조사 실시를 의뢰하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또한, 개정안은 노약자·장애인 등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공직선거법」의 하위 법령 제·개정 권한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부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법체계의 정합성 측면에서 대통령령이 아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위임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개정안은 접근성 제고의 취지를 유지하되, 기준의 적용 범위와 방식이 과도한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설계하고, 위임 형식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시청각 및 언어 장애인과 디지털 취약계층의 선거여론조사 참여를 보장하려는 중국적인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마다 전화·인터넷·대면조사를 병행하도록 하는데, 이는 선거여론조사 관련 비용의 증가로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정당, 후보자 등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32